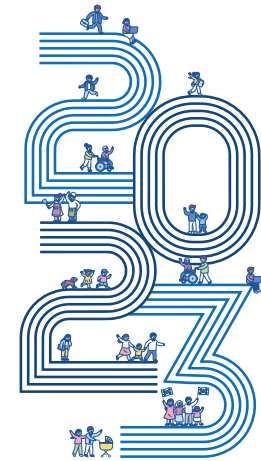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정부
korea.kr

본 책의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s://whatsnew.moef.go.kr>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기획재정부) 8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9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10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11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기획재정부) 12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13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14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15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16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17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19
-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20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기획재정부) 21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22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2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2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6
-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27
-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28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29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기획재정부) 30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31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기획재정부) 32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기획재정부) 33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34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35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36
-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37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2 교육·보육·가족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기획재정부) 38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기획재정부) 39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40
-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획재정부) 41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42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43
-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제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기획재정부) 44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기획재정부) 4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46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47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48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49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50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51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52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관세청) 53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금융위원회) 54
-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55
-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금융위원회) 56
- 청년도약계좌 출시 (금융위원회) 57
-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 (금융위원회) 58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59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60
-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61

-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교육부) 66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교육부) 67
-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교육부) 68
-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교육부) 69
-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 70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교육부) 71
- 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교육부) 72
-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부) 73

-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교육부) 74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교육부) 75
-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교육부) 76
-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환경부) 77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78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여성가족부) 79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80
-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8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여성가족부) 82
-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여성가족부) 83
-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여성가족부) 84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가족부) 85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86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87
- 스톡킹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89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90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115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 116
-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117
-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118
-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119
-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20
-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보건복지부) 121
-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R&D) 지원 (보건복지부) 122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123
-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고용노동부) 124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고용노동부) 125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고용노동부) 12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127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2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129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고용노동부) 130
- 패키지 구동형 원격훈련 도입 (고용노동부) 131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고용노동부) 132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고용노동부) 133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134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35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고용노동부) 136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137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138
-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고용노동부) 139
-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 140
- 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해양수산부) 141
-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2
-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3
-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4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6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질병관리청) 147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자 지정 확대 (질병관리청) 148
-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질병관리청) 149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 (질병관리청) 150

03 보건·복지·고용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99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00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101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102
- 장애수당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103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104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105
- 부모급여 도입 (보건복지부) 106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107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108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09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110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111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112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보건복지부) 114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4 문화·체육·관광

• 장애인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53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54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55
•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 지원 (문화재청)	156

05 환경·기상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부)	161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162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환경부)	163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환경부)	16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환경부)	165
• 먹는샘물 無 라벨 날개 제품 판매 허용 (환경부)	166
•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화 (환경부)	167
•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해양수산부)	168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 (기상청)	169
• 우리나라 영향 태풍정보 상세 제공 (기상청)	170
•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 (기상청)	171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전파 분야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5
•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7
•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178
•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산업통상자원부)	179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산업통상자원부)	180
•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181
•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182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83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중소벤처기업부)	184
•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특허청)	185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 (특허청)	186
•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특허청)	187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7 국토·교통

•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국토교통부)	190
• 항공기 소음단위 및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국토교통부)	191
•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192

08 농림·수산·식품

•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0
• 청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농림축산식품부)	201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3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4
• 낙농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205
•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206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7
•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208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9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10
•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11
•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12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213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14
•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15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16
•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17
•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18
•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19
•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220
•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221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해양수산부)	222
•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방해·교란 행위 금지 (해양수산부)	223
•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의 창구 일원화 (해양수산부)	224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해양수산부)	225
• 어구 생애 주기 관리체계 도입 (해양수산부)	226

-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제공 실시 (해양수산부) 227
-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228
-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 추진 (해양수산부) 229
- 숲경영체험림 제도 시행 (산림청) 230
-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확대 (산림청) 231

09 국방·병무

-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국방부) 237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238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국방부) 239
- 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선 (국방부) 240
-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국방부) 241
-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국방부) 242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 (국가보훈처) 243
- 정전 70주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국가보훈처) 244
- 사회복지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무청) 245
-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병무청) 246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병무청) 247
-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병무청) 248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병무청) 249
-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병무청) 250
-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병무청) 251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병무청) 252
- 후속합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 (방위사업청) 253
-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 (방위사업청) 254
- 방위사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 (방위사업청) 255
- 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 (방위사업청) 256
- 국방과학기술수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준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방위사업청) 257
- 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 258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0 행정·안전·질서

- 미성년자 및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법무부) 263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법무부) 264
-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법무부) 265
-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법무부) 266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법무부) 267
-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법무부) 268
- 고항사량기부제 시행 (행정안전부) 269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 270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271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인사혁신처) 272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행정) (법제처) 273
-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법제처) 274
- 재고운영 개선을 통한 비축물자 상시방출 확대 (조달청) 275
-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조달청) 276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조달청) 277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조달청) 278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경찰청) 279
-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경찰청) 280
-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벌칙금 부과 (경찰청) 281
-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경찰청) 282
-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소방청) 283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소방청) 284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소방청) 285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소방청) 286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287
- 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소방청) 288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 (해양경찰청) 289
- 동인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 290
-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291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292
-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29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94

- 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95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296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297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잇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8
- 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9
-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8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9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10
• 해외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11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12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13
• 기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14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15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6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17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19
•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21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22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2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6
•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27
•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8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29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30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31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32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33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34
• 기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35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36
•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7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38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39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0
•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41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42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43
•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제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44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4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6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7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48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49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50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51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52

교육부

•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66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67
•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68
•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원 질병휴직 확대	69
•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70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71
• 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72
•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3
•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74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75
•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 분야 규제 완화	175
•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	177

법무부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263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264
•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265
•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266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267
•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268

국방부

•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237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38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239
• 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선	240
•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241
•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242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69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270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271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153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154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155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99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100
•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200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201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202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연확대	203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4
• 낙농제도 개편	205
•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206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07
•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208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209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210
•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211
•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212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213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214
•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215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216
•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217
•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218
•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219

산업통상자원부

•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178
•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179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180
•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181
•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182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101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102
• 장애수당 단가 인상	103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104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105
• 부모급여 도입	106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107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108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9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0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11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12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14
•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15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116
•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17
•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18
•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119
• 신·변종 감염병 대응형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120
•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121
•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R&D) 지원	122

환경부

•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77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161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162
• 공동주택 충전소음 기준 강화	163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16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165
• 먹는샘물 無 라벨 날개 제품 판매 허용	166
• 야생동물 총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화	167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123
•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124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125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12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127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12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129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130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131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132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133
• 최저임금액 인상	134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135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136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137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138
•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139
•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140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78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79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80
•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8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82
•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83
•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운영 효율화	84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85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86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87
• 스토킹 피해자 지원	89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9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190
• 항공기 소음단위 및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191
•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192

해양수산부

• 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141
•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168
•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220
•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221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222
• 해양보호생물 관찰 관광 시 방해교란행위 금지	223
•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 창구 일원화	224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225
• 어구 생애 주 주기 관리체계 도입	226
•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제공 실시	227
•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228
•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 추진	229

중소벤처기업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183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184

국가보훈처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	243
• 정전 70주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244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272
-------------------------------------	-----

법제처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행정) 273
-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274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142
-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143
-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144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격 운영 145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약품 거점보관소 운영 146

관세청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53

조달청

- 재고운영 개선을 통한 비축물자 상시방출 확대 275
-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276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277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278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245
-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246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247
-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248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249
-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250
-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251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252

방위사업청

- 후속합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 253
-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 254
- 방위사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 255
- 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 256
-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257
- 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258

경찰청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279
-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280
- 자전거 등 운전자기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281
-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282

소방청

-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283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284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285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286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287
- 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288

문화재청

-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 지원 156

산림청

- 숲경영체험림 제도 시행 230
-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확대 231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185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 186
-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187

질병관리청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147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148
-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149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 150

기상청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 169
- 우리나라 영향 태풍정보 상세 제공 170
-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 171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 289

공정거래위원회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290
-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291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292
-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29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294
- 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295

금융위원회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54
-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55
-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56
- 청년도약계좌 출시 57
-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58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59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60
-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61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296

원자력안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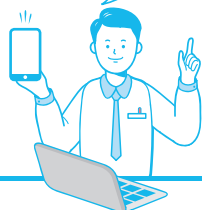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29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298
- 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299
-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30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월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기획재정부) 8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9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10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11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기획재정부) 12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13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14
- 주택론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15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16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17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19
-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20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기획재정부) 21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22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2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2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6
-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28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29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기획재정부) 30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31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기획재정부) 32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기획재정부) 33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34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35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36
-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37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기획재정부) 38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기획재정부) 39
-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획재정부) 41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42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기획재정부) 4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46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47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48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49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50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51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52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교육부) 67
-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교육부) 68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교육부) 75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78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여성가족부) 79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80
-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8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여성가족부) 82
-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여성가족부) 83
-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여성가족부) 84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가족부) 85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86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87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90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99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00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102
- 장애수당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103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104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105
- 부모급여 도입 (보건복지부) 106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108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09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112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보건복지부) 114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115
-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118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123
-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고용노동부) 124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고용노동부) 125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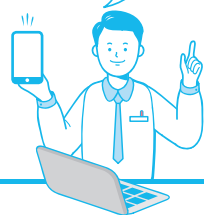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127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28
- 청년일자리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129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고용노동부) 130
- 패키지 구축형 원격훈련 도입 (고용노동부) 131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고용노동부) 132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고용노동부) 133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13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고용노동부) 136
-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고용노동부) 139
- 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해양수산부) 141
-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2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질병관리청) 147
-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질병관리청) 149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55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162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환경부) 163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환경부) 16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환경부) 165
-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해양수산부) 168
-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7
-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178
-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182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83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
- 낙농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205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7
-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208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9
-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212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213
-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15
-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17
-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18
-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19
-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220
-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221
- 어구 생애 주기 관리체계 도입 (해양수산부) 226

-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228
-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확대 (산림청) 231
-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국방부) 237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238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국방부) 239
- 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선 (국방부) 240
-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국방부) 241
-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국방부) 242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 (국가보훈처) 243
- 정전 70주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국가보훈처) 244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무청) 245
-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병무청) 246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병무청) 247
-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병무청) 250
-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병무청) 251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병무청) 252
- 후속합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 (방위사업청) 253
-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 (방위사업청) 254
- 방위사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 (방위사업청) 255
- 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 (방위사업청) 256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법무부) 267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행정안전부) 269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 270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271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인사혁신처) 272
- 재고운영 개선을 통한 비축물자 상시방출 확대 (조달청) 275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조달청) 277
-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경찰청) 280
-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경찰청) 281
-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경찰청) 282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292
-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29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94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296
- 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9
-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월

-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3
-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 (기상청) 171
-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특허청) 185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 (특허청) 186
-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특허청) 187
-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병무청) 248
- 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 258
- 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95

3월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교육부) 71
- 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교육부) 72
-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교육부) 76
-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환경부) 77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53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54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부) 161
-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산업통상자원부) 179
-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법제처) 274

4월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43
-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제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기획재정부) 44
-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교육부) 69
-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 70
-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부) 73
-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교육부) 74
- 스톡킹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89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산업통상자원부) 180
-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181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중소벤처기업부) 184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4
-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방해·교란행위 금지 (해양수산부) 223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해양수산부) 225
-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제공 실시 (해양수산부) 227
-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법무부) 266
- 아동·청소년 디지털 및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8

5월

-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 지원 (문화재청) 156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 (기상청) 169
-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192
-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 창구 일원화 (해양수산부) 224
-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소방청) 283

6월

- 청년도약계좌 출시 (금융위원회) 57
-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화 (환경부) 167
- 우리나라 영향 태풍정보 상세 제공 (기상청) 170
- 숲경명체험림 제도 시행 (산림청) 230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병무청) 249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법무부) 264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행정) (법제처) 273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 (해양경찰청) 289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297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 타 : 2022년 기 시행되었거나 2023년 시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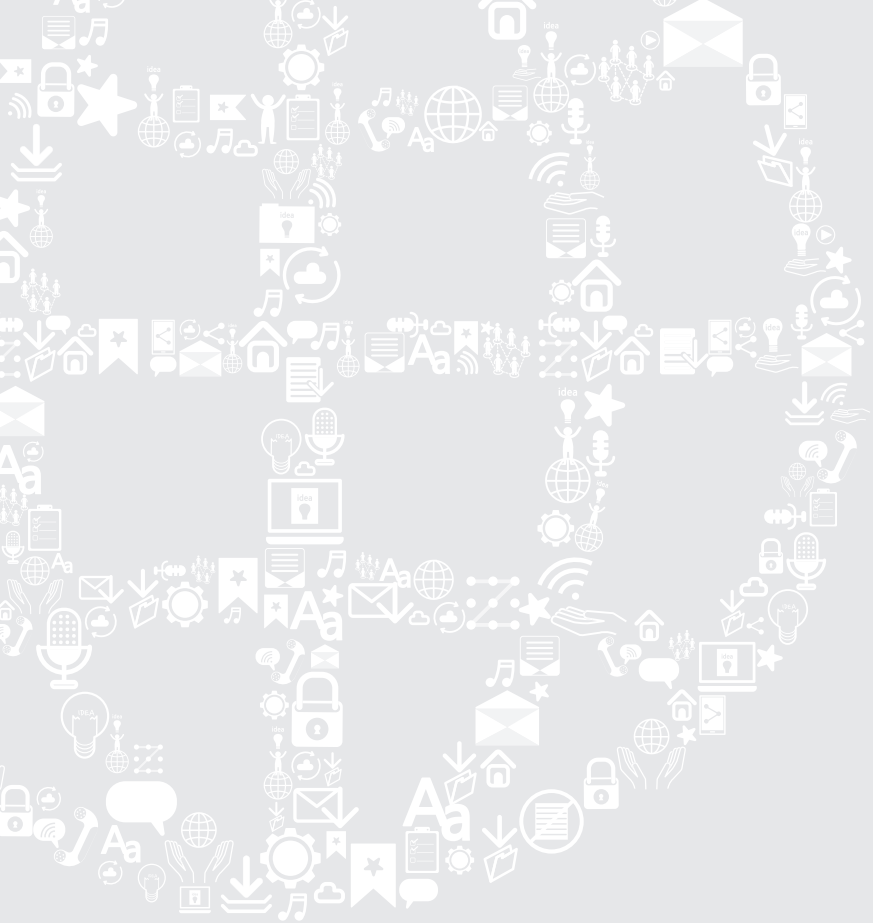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27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40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관세청)	53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금융위원회)	54
•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55
•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금융위원회)	56
•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 (금융위원회)	58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59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60
•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61
• 국립 온라인학교 신설 (교육부)	66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101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107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110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111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	116
•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117
•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119
• 신·변종 감염병 대응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20
•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보건복지부)	121
•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R&D) 지원 (보건복지부)	122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고용노동부)	126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35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137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138
•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	140
•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44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가기 거점보관소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146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질병관리청)	148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 (질병관리청)	150
• 먹는생물 無 라벨 날개 제품 판매 허용 (환경부)	166
• 전파 분야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5
•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국토교통부)	190
• 항공기 소음단위 및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국토교통부)	191
•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0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농림축산식품부)	201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3
•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206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10
•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11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14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16
•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해양수산부)	222
•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 추진 (해양수산부)	229
•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방위사업청)	257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법무부)	263
•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법무부)	265
•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법무부)	268
•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조달청)	276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조달청)	278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경찰청)	279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소방청)	284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소방청)	285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소방청)	286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287
• 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소방청)	288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	290
•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291

<https://whatsnew.moef.go.kr>

여기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8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After

앞으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2억→2.4억) 및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2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9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After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합니다.



3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0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연수	현행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After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근속연수	개정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4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



After

해외자회사 배당금은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 조정



5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합니다.

· 국제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제 투자 유도를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6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종전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산출하였습니다.



After

증여이익계산 시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되고
과세제의 거래가 합리화됩니다.



7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4

기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였습니다



After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상속 지원을 위해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8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인	3.0%	6.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After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9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6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국가전략기술 등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여왔습니다.

현행			
구분	공제액 (%)		
	대	중건	중소
일반	1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After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시설투자의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개정			
구분	공제액 (%)		
	대	중건	중소
일반	1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10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7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기본공제 : 고용중기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청년 범위: 15~34세)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중건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건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1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9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면세산업의 환경 변화로 특허기간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After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를 확대합니다.



12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54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Before

종전에는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LTV 한도 주택가격별·지역별 20~50% 상이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After

대출규제가 단계적 정상화됩니다.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함께 확대 (LTV 최대 70% 허용, 대출한도 4억~6억)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현행	개정안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현행	개정안
자녀 1명 당	70만원	80만원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단독	150만원	165만원	자녀 1명 당	70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추진배경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분리과세 선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 시행일 (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근속연수	현 행	개 정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241)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적용대상 소득)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은 5%),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익금불산입률) 수입배당금의 95%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추진배경 퇴직자 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상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 추진배경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합리화
- 주요내용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242)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를 위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대상 채권) 국채(국채법§5①), 통화안정증권
- (투자 방법) 직접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원천징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영의 세율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계개편안 발표('22.7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추진배경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
- 주요내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고, 과세제의 거래를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 종전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것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합니다.
- 종전 증여이익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를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계개편안('22.7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추진배경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증여이익계산 시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및 과세제의 거래 합리화
- 시행일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 (과세제의 거래 합리화)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완화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재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또한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합니다.
- 나아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0.5조원 미만
 -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600억원
 -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 → 5년) 및 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종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종 전		개 정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6 %	3.6%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2.0%	4.0%
94억원 초과	3.0%	6.0%	2.7%	5.0%
법인	3.0%	6.0%	2.7%	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추진배경** 응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통한 세부담 적정화 및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 주요내용**
 -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종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율 조정
- | 과 세 표 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 법 인 | 2.7% | 5.0%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의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현 행				개 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 당기분 기본공제(㉑)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㉒) - (기본공제(㉑))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공제율 조정 • (좌 동) - 기본공제율 상향			
구분	공제액(%)			구분	공제액(%)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일반	1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국가전략기술	8	8	16
- (추가공제(㉒)) [당해 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 3% 국가전략기술 : 4%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좌 동)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현 행					개 정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수도권		중견 (3년)	대기업 (2년)		중소 (3년) 수도권		중견 (3년)	대기업 (2년)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일반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 청년 범위: 15~34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두 차례까지 가능해집니다.

- 2023년 이후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를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특허 기간은 회당 5년 이내로써 최대 10년입니다.
- 따라서,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이 특허 갱신까지 두 차례 받으면 최대 20년 동안 특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개정

- 추가공제
 -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 갱신 횟수 확대

- 추진배경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 주요내용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을 두 차례까지 허용 (회당 5년)함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황

현 행		개 정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600 ~ 8,800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좌 동)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 → 20만원)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추진배경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
 -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7%*까지 상향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22.12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추진배경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
- 주요내용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 추진배경 교육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현 행〉				〈개 정〉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Min (총급여×20%, 300만원)	250	200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100	-	-		도서공연 등	-	

■ (영화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현 행〉		〈개 정〉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상향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계개편안 발표('22.7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년말까지 연장하고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공제한도 단순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년 → '23년)합니다.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계개편안 발표('22.7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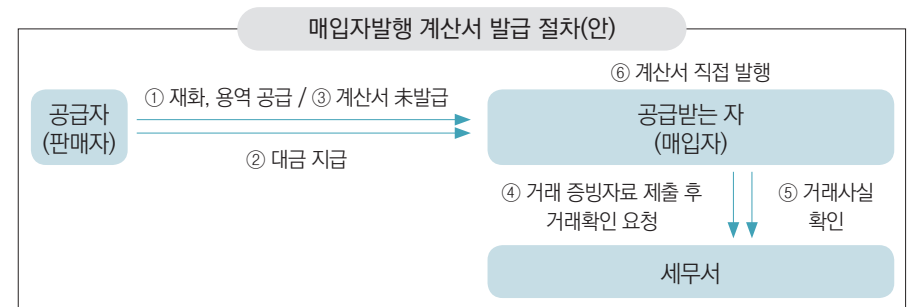
-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주요내용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법인세제과 (☎ 044-215-4221)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계개편안 발표('22.7월)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특례 적용 기간을 대폭 확대(국내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간→20년간) 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
 - *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 가능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 *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및 본회의 통과('22.12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5→10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 *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추진배경 벤처기업 인재 유입 지원
- 주요내용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누적한도 5억원)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도 적용
 - * 종전에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허용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 추진배경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추진배경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3)

기부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구분하였습니다.

-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고,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 **추진배경** 기부자의 납세 이해도 및 편의 제고
- **주요내용**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주요내용**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600억원*
 -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기본공제 확대) 5억원 → 10억원
 -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증여일로부터 5년 내 → 3년 내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다만,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3)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 \text{상속세 납부액} \times \text{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times \frac{\text{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365}$$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 갖추면 될 뿐, 업종유지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계개편안('22.7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대상기업) 중소기업
 - (적용방식)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8)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2)

특정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 용역뿐만 아니라, 만화방(만화카페) 내에서의 시간제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추진배경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
- 주요내용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2.7월)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추진배경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 주요내용 만화방, 만화카페 등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결정·경정 등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3)

인지세 납세 편의 등을 감안하여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2.7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주요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2.7월)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 추진배경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이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차종별로 100~400만원)*됩니다.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22.7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2.12.31. → '24.12.31.)
 - '24.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 **시행일** 2022년 12월 31일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사례)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22.7월)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추진배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과 (☎ 044-215-4151)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세금을 신고·납부한 자는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받아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현재는 신고·납부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과 (☎ 044-215-4152)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를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하므로, 동의없이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시행령 규정 사항)

-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
-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주요내용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4월 1일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1)

경매·공매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낮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었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계개편안 본회의 통과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 **추진배경**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주요내용**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낮은 해당 세금의 배분예정액은 임차보증금이 대신 변제
- **시행일** 2023년 4월 1일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세액공제

■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계개편안 보도자료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 **주요내용**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5~0.5% 세액공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추진배경**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 **주요내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하여 청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이 상향됩니다.

■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법인세가 10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됩니다.

■ 그 외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7년~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청년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지원 강화
-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등의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34세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 추진배경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
 - 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2년 50% 감면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포함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영화'에 더해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공제대상에 추가됩니다.
-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추진배경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 주요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추가
 -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2.7월)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 추진배경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유도
-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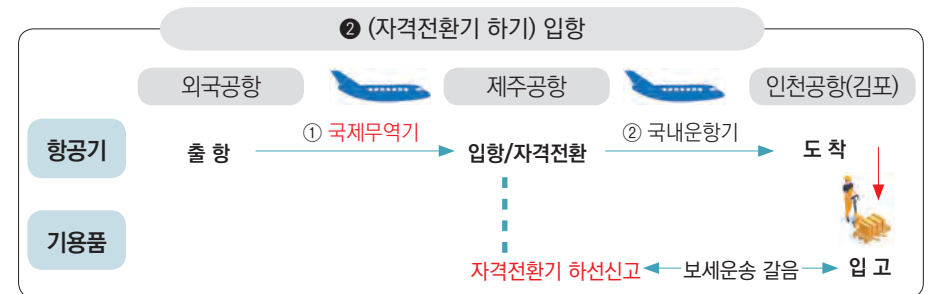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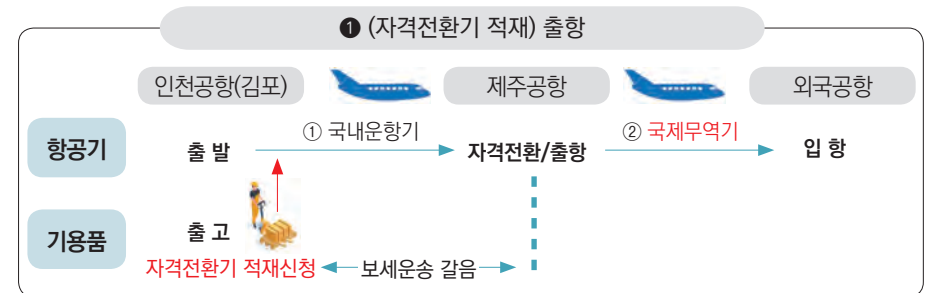
-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042-481-7831)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예정인 국내운항기에 적재하거나, 국제무역기에서 자격전환한 국내운항기에 하기하는 제도(이하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 현재는 일부 대형항공사를 제외하고 지방 국제공항별로 자사 항공기용품 보세창고 또는 기내식 보세공장이 없는 항공사가 다수여서 지방공항으로 외국항공기용품(기내 서비스용품, 기내 판매물품, 기내식 등) 보세운송 및 지방공항에서 적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① 해당 지방 노선 운항 포기, ② 기내판매물품 매출 포기, ③ 기내 서비스 저하, ④ 여행자 불만 증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신청으로 보세운송신고를 같음하고 국내운항기를 보세운송 항공기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2.7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및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5)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02-2100-2524)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집니다.

- 종전에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금법 §21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등 기술준수 필요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 **추진배경**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애로가 발생, 금리인상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필요
- **주요내용**
 -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로 상향 단일화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대출한도 4억→6억, LTV 70%허용)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 **추진배경** 금융상품 계약 시 설명의무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 시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여 편의성 제고할 필요
- **주요내용**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설명의무 등 이행사항을 확인해줄 수 있음
- **시행일** 2022년 12월 8일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02-2100-2524)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권유 및 계약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이 모두 '외화'로 설정된 보험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외화보험 판매시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 **추진배경**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주요내용**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2년 12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02-2100-1686)

2023년 6월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청년도약계좌 출시

- **추진배경** 코로나 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추진
- **주요내용**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 **시행일** 2023년 6월 출시(잠정)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4)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 02-3145-7135)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이 마련·시행됩니다.

- * '21년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141개사) 및 선불업자(73개사)가 적용대상이며,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대상
-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 8월말)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

- **추진배경** 결제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시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인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
- **주요내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산정원칙)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
 - (구분관리) 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①결제수수료와 ②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하여 수취·관리토록 규정
 - (공시) 공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
- **시행일** 2022년 12월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96)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되어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 보도자료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금융혁신 가속화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율참여한 상생·협력의 논의를 거쳐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추진
 - 퇴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인보험 외 주택화재 등 물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를 추가 제공
 -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되고,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금융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확대
- **시행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 '22년 10월
정보확대 :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22)

'23년 상반기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00-1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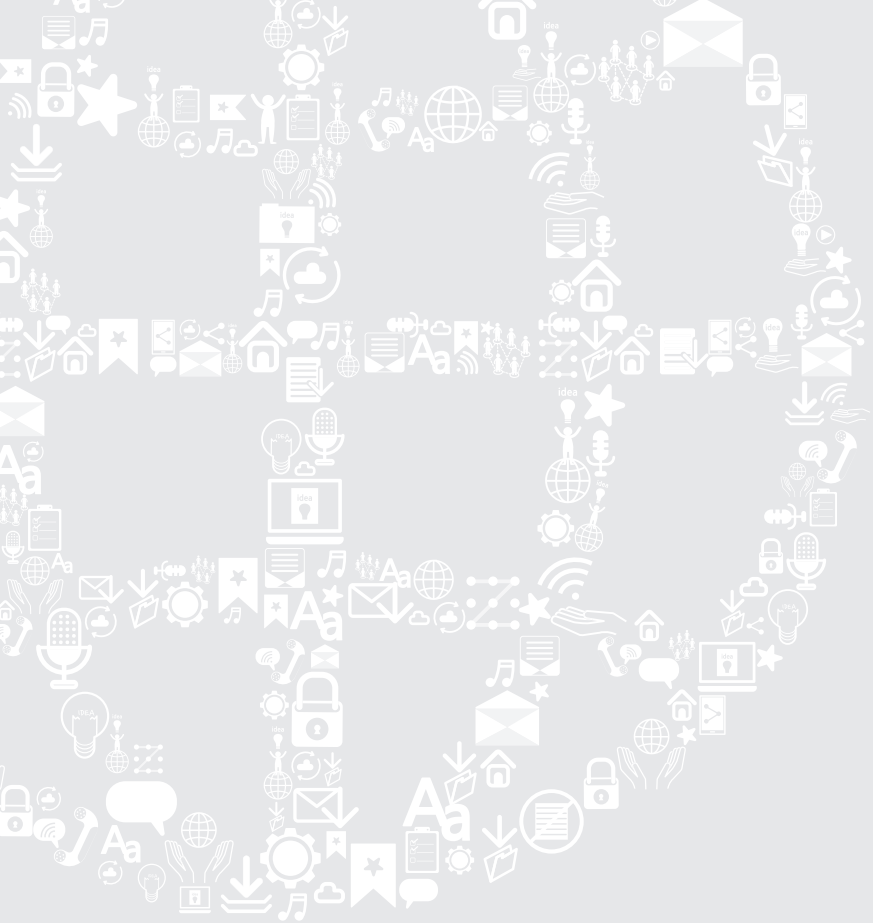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제청 등에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2, '13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 * 고액현금거래정보(CTR):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명의로 1거래일간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
-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민비서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알림서비스로, 카카오톡·토스 등 12개 앱을 통해 알림 제공(행정안전부 운영)
- 만약,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참고 FIU 홈페이지>정책마당>자금세탁방지제도>고액현금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절차 개선

- 추진배경** 등기우편은 명의인에게 도달하는데 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되고, 명의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에 있어 통보방식 개선 추진
- 주요내용** 대국민 온라인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CTR 제공사실 조회·확인
- 시행일** 2022년 12월 16일 (서비스 개시)
2023년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66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시행일 : 2023년 중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도 온라인학교 신설·운영을 통해 학생이 수강·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79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완화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종전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제출해야했습니다.



After

향후에는 미혼부 자녀는 아동양육비를 먼저 지원받고 사후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면 됩니다.



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78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꾸준하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After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 044-203-6280)

2023년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됩니다.

-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며,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고교 단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 **추진배경**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
- **주요내용**
 -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 도입
 -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
 - 4개 교육청을 선정하여 2023년 시범운영 추진, 연차적 확대 예정
- **시행일** 2023년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044-203-6522)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됩니다.

-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합니다.
 - * 기초학력 진단검사(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형을 통해 즉각적인 보정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 정규수업과 연계하여 방과후 교과보충 및 튜터링 프로그램 등도 지원
- 교내 협의회가 설치되어,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 ※ (절차) 기초학력 진단(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 교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 교내 지원방안 마련
- 또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하여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 ※ 심층진단 종합·분석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주요내용**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교실·학교·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등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203-6179)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됩니다.

-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기능 및 급여 환수 대상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 **추진배경** 부양·양육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급여 제한 심사 기능 및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소득자료 요청 권한 마련
- **주요내용**
 -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기능 부여
 - 급여 환수 업무 시 관련 기관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 요청 권한 마련
- **시행일** 2023년 1월 19일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203-6970)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합니다.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5년까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추진배경** 교육공무원 휴직 확대를 통한 권익 증진
- **주요내용**
 - (가사휴직)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 가능
-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 (☎ 044-203-6312)

2023년 4월 19일부터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044-203-6547)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87)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학부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교육행정시스템에 입력(학생 입학 후 90일 내)해 왔으나, 이제는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및 미접종 학생 대상 조치 등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교내 감염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 **추진배경**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 **주요내용**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및 장애학생 지원센터장 자격 규정,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초·중학교 입학생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학교 및 학부모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교육행정시스템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
- **시행일** 2023년 3월 2일

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1)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를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변경합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세부적인 제한 사용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2023년 교육부 본예산 보도자료

교육급여 급여형태 개편

- **추진배경**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활동 지원비의 지급수단을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 등 바우처 형태로 변경
- **주요내용**
 - 교육급여 급여형태를 계좌이체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등으로 개편
 - (원칙) 수급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카드포인트로 지급
 - (예외)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로 지급
- **시행일** 2023년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 044-203-7081)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됩니다.

-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각종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배경**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주요내용**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
-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원격대학,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044-203-6421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격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

- 추진배경** 원격대학이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위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재직자 등 학습자에게 실무경험 연계 교육과정 제공
- 주요내용**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 설치 허용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원격학습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비대면시대에 원격대학이 핵심적인 역할 수행하도록 함
 - 사이버대학(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 허용
 - 직업·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 충족 및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으로 원격교육 활성화
-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 신설되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내 의견수렴 및 교원확보 등 원격대학 내 준비 기간을 거쳐 2024학년도 적용 예정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71

그동안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2023.1월 고시 예정)로 대출받고,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대출금리 등은 2023년 1월 초 교육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고금리 시대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대출 가능해진다.

'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주요내용

- 추진배경**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자
- 주요내용**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대출가능 연령: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 대출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고정금리)
 -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 대출기간: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통해 신청기간에 신청
- 시행일** 2023년 1월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 (☎ 044-203-6020)

2023년 3월 28일부터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 **추진배경** 국립대병원이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주요내용**
 - 국립대병원의 사업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 추가 신설
 - 융합의학을 토대로 다양한 환자 치료방안 연구 및 개발 가능
- **시행일** 2023년 3월 28일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환경부 환경교육팀 (☎ 044-201-6535)

2023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22.6.10. 환경교육법 개정)

- 학교환경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과정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 및 진로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채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중학교의 경우 환경과목을 선택하여 정규 교과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거나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경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이 가능합니다.

참고 환경부 환경교육포털(keep.go.kr) > 탄소중립·생태계·물 등 다양한 환경교육자료,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용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 **추진배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 실시를 통해 미래세대 환경 소양 및 행동 역량 증진 필요
- **주요내용**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3월 1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4)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상향되면 3만 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22년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23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

- **추진배경**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을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강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4)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를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완화를 통한 미혼부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필요
- **주요내용** 출생신고 절차 중인 미혼부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 강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지원시간은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려 8만5천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 ※ 지원시간 : ('22) 연 840시간(1일 3.5시간) → ('23) 연 960시간(1일 4시간)
 - ※ 지원가구 : ('22) 7만5천여 가구 → ('23) 8만5천여 가구
- 여러 사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 **추진배경**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주요내용**
 - 아이돌봄 시간제 정부 지원 확대
 - ※ ('22) 연840시간→('23) 연960시간
 - ※ ('22) 7만5천여 가구→('23) 8만5천여 가구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 개정된 인증기준에는 출산·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도, 청년(미혼)·중장년층(자녀성장)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되어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 개정 인증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안내('23년초)
- '가족친화 최고기업'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멘토가 되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이끌게 됩니다.
- 2008년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시행 후 15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최고기업'이 가족친화문화 정착의 다양한 노하우를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가족친화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22년 말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5,415개 중 최고기업은 12개 ▲대기업 3개 (인증 4회, 인증 15년 유지), ▲중소기업 9개(인증 3회, 인증 12년 유지)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편

- **추진배경**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15년 계기 제도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도모
- **주요내용**
 - 생애주기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촉진 도모
 - 기업 스스로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노력을 지원하는 기반 조성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2)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 '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23년부터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 **주요내용** 종전 '22년 6개월 간(7월~12월) 시행되었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23년부터 12개월로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283)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 및 단기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파도 기댈 가족이 없는 청년·노년 등 1인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질병, 위기상황 등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
- **주요내용** 1인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병원동행 및 단가가사·간병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4

청소년 국제교류 상대 국가가 확대되고 직접 교류와 비대면 교류를 혼합한 새로운 방식의 청소년 교류를 추진합니다.

- 아세안 국가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이 '23년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되며,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20~'22)을 유럽·아메리카 등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 * (규모) ('22) 9개국 240여명 → ('23) 13개국 400여명, ('22) 11개국 → ('23) 30여개국, ('20~'22) 4일(온라인) → ('23) 7박 8일(한국 초청사업으로 확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 다양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교류방식 전환) 직접 교류 + 비대면 교류(코로나 이후)를 혼합한 새로운 방식의 청소년 교류 추진
 - (국가간 청소년 교류 국가 확대) 아세안 국가 위주 교류 → 유럽·중남미 교류국 확대 (9개국 → 13개국)
 - (글로벌 서밋 개최) 전세계 청소년 대표를 국내로 초청하여 전지구적 의제 논의 및 발표, 국내 문화체험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2, 624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이 연 15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작년 지원액(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만 9~24세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 **추진배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156천원 * ('22.1월) 연 144천원 → ('23.1월) 연 156천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모바일 앱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6279)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인당 지원액(월 30만원)을 10만원 인상된 월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을 '직전 6개월'로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요건〉

【현 행】	【개 편】
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이후 퇴소자)	① 좌동
②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	② 좌동
③ 퇴소일 기준 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	③ 퇴소일 기준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

※ 위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통한 쉼터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최장 36개월)
 - * ('22.1월) 월 300천원 → ('23.1월) 월 400천원
 - 신청방법 : 본인 최종 청소년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6, 6313)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위기청소년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생활비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아울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 * 예산 증액 ('22년) 2,147백만 원 → ('23년) 3,587백만 원(증 14억 원)
- 또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추진배경**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바·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9~24세 저소득 위기청소년
 - 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22년 8월부터)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월 15만원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지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02-2100-6425, 6426)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참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추진배경** 스토킹처벌법 시행 및 스토킹보호법 제정 추진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권익 보호 증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보호 및 의료·무로법률 등 지원 중

• **주요내용**

- (긴급주거지원)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간 연계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7일 이내)
-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3개월 내외)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 **시행일** 2023년 4월
※ 스토킹 피해자는 누구든지 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하시면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기술 및 숙련수준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확대됩니다.

▣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AI·3D·바이오·빅데이터 등) 과정 확대로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20년) 50개 → ('21년) 59개 → ('22년) 66개 → ('23년) 74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편 필요
- **주요내용** •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AI·IT·바이오·빅데이터 등) 확대를 통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 **시행일** 2023년 1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99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시행일 : 2023년 1월

Before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었습니다.



After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Before

꾸준하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2년 기준 중하위 최대 생계급여액

가구구성원수	지원 금액
1인가구	583,444원
2인가구	978,026원
3인가구	1,258,410원
4인가구	1,536,324원
5인가구	1,807,355원
6인가구	2,072,101원

After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23년 기준 중하위 최대 생계급여액

가구구성원수	지원 금액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가구구성원수	지원 금액
1인가구	583,400원
2인가구	978,000원
3인가구	1,258,400원
4인가구	1,536,300원
5인가구	1,807,300원
6인가구	2,072,100원
7인가구	2,072,100원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주거용 재산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5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5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After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가구구성원수	지원 금액
1인가구	623,300원
2인가구	1,036,800원
3인가구	1,330,400원
4인가구	1,620,200원
5인가구	1,899,200원
6인가구	2,168,300원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주거용 재산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5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5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4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3

장애수당 단가 인상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왔습니다.



After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합니다.



5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After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이 허용됩니다.



7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6

부모급여 도입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After

부모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6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시행일 : 2023년 1월/하반기

Before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After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8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Before

지금까지 더 좋은 복지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After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9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10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 (467명) 지원

After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살 예방 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 (500명, +33명) 추가 지원

10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23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시행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기프로그램만 운영했습니다.



단기프로그램 인센티브 20만원

After

「청년도전지원사업」 중 · 장기 특화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수준이 확대됩니다.



단기프로그램 (인센티브) 50만원

중 · 장기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원 (50만원 x 5개월) (인센티브) 50만원

11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24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K-Digital Training은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사업입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분야

After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디지털 분야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 반도체
- 차세대 디스플레이
- 신재생에너지
- 에코업
- 드론



12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25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https://whatsnew.moef.go.kr>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2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식품에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었습니다.



After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3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시행일 : 2023년 2월

Before

새벽배송 농산물은 회수·폐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습니다.



After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044-201-1721)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5)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 그간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3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군(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예정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어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는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
 - 이에,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및 사업화 추진
- **주요내용**
 - (운영방식) 지자체에서 유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
 - (지원사항) 국가·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존)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 **주요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
 - 기존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 확대 :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4),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 (변경) 5,300~9,9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추진배경**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 심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 **주요내용**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 인상 및 수급자 재산 산정기준 완화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8)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장애수당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츄츄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추진배경**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 *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 여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 (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자 확대 : '18년 9.4만 → '20년 11.5만 → '21년 12.6만 → '22년 13.2만 → '23년 14만 이상

참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전면 허용

- **추진배경**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됨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43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
-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 **주요내용**
 - 자립수당 인상 : (현행) 월 35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 의료비 지원(신설)
 -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 (변경)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 ('22년 기준)
- **시행일** 2023년부터
 - 자립수당 인상 : '23.1월
 - 의료비 지원 : '23. 하반기

부모급여 도입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미정) 부모급여 도입 발표

부모급여 지원사업 주요내용

- 추진배경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추진
- 주요내용
 - (지급대상) 만 0~1세(*22.1.1. 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급방식) 현금, 다만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044-202-2681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50% 지원
 -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2, 3893)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약 인원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22년, 467명 → ’23년, 500명)합니다.
 - *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명 → 약 5.1만명) 증가 예상
-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의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강화

- **추진배경**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사례관리 인원 증가 등에 대비한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국비 5억) 신설
 - 자살예방 전담인력(+33명)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044-202-3866, 3863)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 (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 정신의료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였습니다. (’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 **추진배경**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의 정신의료기관의 보호병동 환경을 감염병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치료친화적인 환경으로의 개선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장비 비용 등 지원(’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 044-202-3031)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 돌봄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 시범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 **추진배경** 커뮤니티케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하여, 선도사업('19 ~ '22)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의료-돌봄 연계 강화
- **주요내용**
 - (사업내용)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
 - (방문형 의료서비스) 지역 특성(도시, 농어촌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예: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확충
 -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등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044-202-3212, 3201, 3202)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2)

사회서비스를 투자 펀드 조성, 신규 모델 개발, 혁신 기반 조성으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 (펀드 조성)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첨단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조성 규모) '23년 140억 원(국가 100억 원 + 민간 40억 원)
 - (시행일) 운용계획 수립('23년 1분기) → 펀드 조성('23년 2분기) 예정
- (생활사회서비스)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23년 하반기)
 -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 (기반 조성)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충·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혁신 모델 확산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 (시행일) 사업 공모('23년 1분기) → 모델 개발('23년 2분기~4분기) 예정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0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3. 4월 ~)합니다.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 → 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
 - * 기본형 차감 폐지(월△22시간 → △0), 확장형 차감 축소(△56 → △22)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 개편안〉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22	주간활동	월 85시간(일 4시간)	월 125시간(일 5.5시간)	월 165시간(일 7.5시간)
	활동지원 차감	-	△ 22시간	△ 56시간
▼				
'23	주간활동	월 132시간(일 6시간)		월 176시간(일 8시간)
	활동지원 차감	-		△ 22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2.5만명 → 3만명)
-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 → 7.9만명) 월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 → 25만원)됩니다.
-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 → 960시간)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해 대상자 1만명 확대 (6.9만명→7.9만명) 및 월 바우처 지원액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
 - (중증장애아동 돌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시간 확대 (840시간→960시간)
- 시행일** 2023년 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 ('23) 19.0만개

-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일 자리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주요내용

- **추진배경**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방문형, 통원형 등으로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 **추진배경**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노인일자리 확대
- **주요내용**
 - 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형 1.5만명, 민간형 2.3만개 전년 대비 3.8만명 확대
 - ② 노인일자리 조기추진
 - 참여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모집 ('22.12월) 및 참여('23.1월) 실시 추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03)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23~'25) :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23),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 시스템 구축 완료('25)
-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7)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 * 국내 암생존자('19년 기준): 214만명(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
-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근거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이를 통해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 추진배경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해소를 위해 의료법 제40조의3(진료 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20.3월)
- 주요내용
 - (구축목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효율적인 진료기록 발급 등 관리체계 강화
 - (기대효과)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안전망 강화
 -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 보장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시행일 2023년 12월경

암생존자 중심 근거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사업

- 추진배경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암치료 후 사후관리와 암생존자의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됨
- 주요내용
 - 암생존자 중심 연구-임상-활용 Ecosystem 구축 연구
 - 역동적인 동의 체계를 바탕으로 환자 참여형 Ecosystem을 구축과 운영
 - 암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연구
 - TRC 실수요 미충족 헬스케어 기반 기술개발 목록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 개발 도전
 - 암생존자 헬스케어 기술 효과검증 임상연구
 - 헬스케어 기술기반의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효과검증 수행
- 시행일 2023년~2027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1)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됩니다. ('22년, 7억 → '23년, 14억)

-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은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명존중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위원) 정부(6), 종교계(7), 노동계(2), 재계(3), 언론계(8), 전문가(6), 협력기관(14), 총 46개 기관으로 구성
- 2023년에는 종교계·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사랑 포럼, 공동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자조모임, 모바일 자살예방상담플랫폼 개발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역시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44-202-2867)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합니다.

* '23년 ~ '27년, 총 399.5억원

-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확대

- 추진배경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확산
- 주요내용
 - ① 생명존중 민관협의회 운영
 - ② 유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위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사업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비대면진료기술개발 (R&D)

- 추진배경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및 임상현장에서의 실증 지원
- 주요내용
 -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1단계, '23~'25) 후 실증(2단계, '26~'27)을 지원하여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①비대면 진료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②위중증 선별 및 응급대응 기술, ③비대면 진료 CDSS·PDSS 등 개발 지원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비대면 진료 기술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지원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44-202-2865)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여,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 등
-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 **사업명**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 **사업규모** 7년간 총 464억원('23~'29)
- **추진목적** 향후 출현할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에 선제 대응하고자 RNA 바이러스 감염기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 **주요내용**
 -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를 대상 감염체로 선정
 - RNA바이러스의 공통 감염기전(세포침투, 자가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 RNA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변이에도 유효하며, 감염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함
 - 후보물질 도출부터 비임상, 임상 1상까지 단계별 과제 지원
- **시행일** 2023년~2029년(7년)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044-202-2899)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제조기반 마련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 지원을 하겠습니다.
 -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

- **추진배경**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제조기반을 마련
- **주요내용**
 -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인공혈액 생산을 위한 인공 적혈구 및 혈소판에 대한 인공혈액세포 분화·중식 등의 핵심기술 확보 지원
 -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세포배양, 자동화 등 표준화된 인공혈액 공정 기술 개발 및 인공혈액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등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
 - (평가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지원)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의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규제 기준 및 ELSI 분석 및 임상연구 진입 지원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법 개발 지원
 - (사업단 운영비) 사업 수행(과제 선정 및 평가, 사업단 운영 등) 전문화 및 고도화, 실질적 사업 융합 지원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R&D) 지원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044-202-2899

임상적용이 가능한 이종이식제 개발을 위해 이종장기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심장과 같은 고행장기에 대한 이종고형장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영장류 이식 모델 검증 등 비임상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췌도, 피부와 같은 이종 세포 및 장기의 비임상·임상 단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이종장기연구 개발사업

- **추진배경** 장기이식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종장기 개발 및 이종세포 등의 임상적용 가능성 검증
- **주요내용**
 - (이종고형장기별 기술개발) 각 고행장기별로 형질전환돼지 개발부터 영장류에서의 유효성 검증까지 지원
 - (이종 세포 및 장기의 임상 가능성 검증) 형질전환돼지의 췌도, 피부, 각막의 제조 공정 및 임상연구 진입을 위한 전임상 시험, 임상 프로토콜 지원
 - (이종장기기술 인프라 구축) 이종장기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및 법·제도 정립 등 지원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94

구직단념청년 등에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사업을 확대합니다.

-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됩니다.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청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추진배경** 니트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등 확대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 신설) 사업 참여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편 등 다양화하고,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22>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운영 → <'23> 단기(1~2개월) 프로그램, 중·장기(5개월이상) 프로그램
 - (지원수준 확대) 사업 참여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 ※ <'22> 단기프로그램 20만원
 - ※ <'23>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25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137)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22.11.24일에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추진배경** '23년부터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주요내용**
 - 지원 직종을 추가*하여,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 LED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SW구축(에너지관리), 드론제어,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5개 직종 추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044)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본격 시행('23.1.1.) 보도자료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추진배경**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
 -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300만원 이상 특고 등)이 아닐 것
 - (훈련내용)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직무전문성 향상 교과
 - (훈련비)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 전액 지원
 - 단, 4회 이상 수강 등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 10% 자부담 부과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TF (☎ 044-202-7338)

2023년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가 찾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구인·구직 애로 해소, 고용복지+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구인난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주요내용**
 - (기업) 기업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등 채용 서비스 밀착 제공
 - (구직자) Jobcare를 활용한 구직자 역량진단 및 유형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 '22년 기업 9개, 구직자 6개 고용센터 → '23년 하반기, 48개 관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참고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확대

- 추진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덜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구직촉진수당 차등화)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성공수당 확대) I 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II 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지급
- 시행일** 2023년 1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 ('22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 '23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지원기준) 소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 (지원방식)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 '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확대

- 추진배경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요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참여방식)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지급
 -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
- 시행일 2023년 1월 초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추진배경** 자체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에서 효과가 높으나, 정부지원(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
- **주요내용**
 - (규제개선)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개별 건마다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과정인정 이후에도 훈련실시 등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불필요
 - (대상) 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시행일** 2023년 1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겨거나 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추진배경** 재직근로자 특성상 훈련시간·장소적 제약의 문제로 원격훈련을 선호, 다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 필요
- **주요내용**
 - (규제개선)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하여도 훈련비 지원(기존) 과정별 이수 필요 → <변경> 과정별 이수하지 않아도 훈련시간 충족 시 지원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등
- **시행일** 2023년 1월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추진배경**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10%)를 납부토록 하고, 신청절차 등이 까다로워 훈련참여가 저해
- **주요내용**
 - (규제개선) 기업이 위탁훈련 시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 지원 (자부담금 면제),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등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및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 **시행일** 2023년 1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95)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추진배경**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 **주요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를 배치하여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훈련 추천 및 훈련비 지급 등 행정업무까지 토털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3년 1월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3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044-202-7075)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 신규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치단체
 - (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 (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참고 : 중소건설현장(1~50억)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단위: 명)>

전체	12대 위험요인	① 단부/개구부	② 철골	③ 지붕	④ 비계/작업발판	⑤ 굴착기
566	344	51	48	40	39	28
100%	60.8%	9.0%	8.5%	7.1%	6.9%	4.9%
⑥ 고소작업대	⑦ 사다리	⑧ 달비계	⑨ 트럭	⑩ 이동식비계	⑪ 거푸집/동바리	⑫ 이동식크레인
28	22	21	19	18	17	13
4.9%	3.9%	3.7%	3.4%	3.2%	3.0%	2.3%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시행

• 추진배경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주요내용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

구분	10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적용시기	'20.7.1.	'21.7.1.	'22.7.1.	'23.7.1.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입니다.
 -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 ① 굴착기 63명(21.5%), ② 고소작업대 62명(21.2%), ③ 트럭 52명(17.7%),
 - ④ 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 타워크레인 13명(4.4%), ⑥ 향타·향발기 10명(3.4%) 순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22.10.18. 시행)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6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됩니다.

-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
-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
-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추진배경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OEM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신청 허용

- 추진배경 OEM제조에 대한 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주체 합리화
- 주요내용
 - OEM제조인 경우 MSDS 작성·제출 의무가 위탁자에게 부과되도록 명확화하고 위탁자의 비공개신청도 허용
 - ODM제조인 경우 수탁자에게 MSDS 작성·제출 의무 부과
 - OEM 제조를 위탁한 자가 비공개신청을 득하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신청결과 또는 제출한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안전의무 이행 도모
- 시행일 2023년 1월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 044-202-8874)

2022년 10월 18일,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 ①2-니트로톨루엔(특별), ②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③벤조(a)피렌(특별), ④시클로헥실아민, ⑤와파린(특별), ⑥포름아미드(특별), ⑦산화붕소(특별), ⑧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181종으로 확대)이며,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45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 물질명, 근로자명,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시행

- 추진배경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 주요내용
 -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밀폐 또는 국소 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5)

『선원법』 개정으로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 관련 노무·인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노동권·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인권교육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점과 해상근무라는 선원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 심화, 외국인 과정으로 나뉘며 최초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시행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교육 방법, 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내년부터 선원·노동권 인권교육이 의무화 됩니다” 보도자료 게시 예정

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 추진배경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원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방안 도입 필요
- 주요내용
 - (대상)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외국인 포함)
 - (주기) 매년 2시간(최초 교육 3시간)
 - (방법) 이러닝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
 - (내용) 선원의 노동권·인권에 대한 기본사항과 그 외 다문화, 성인지 등 포괄적인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
- 시행일 2023년 1월 5일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043-719-2188)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21.8.17. 개정·공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했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 추진배경 국제적 추세 반영, 소비자에게 섭취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식품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주요내용 식품의 표시가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면 변경·시행
- 시행일 2023년 1월 1일(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년 1월 1일 시행)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043-719-3211)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새벽배송** 유통체계와 소비경향에 맞추어 소비자에 전달되기 전에 부적합 식품을 차단하도록 신속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 '20년 2.5조원 규모에서 '23년 11.9조원으로 약 4.8배 성장 전망(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1.12.)
- ** 소비자가 신선식품 등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0시 이전)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집 앞에 배송해주는 시스템
- 새벽배송 농산물은 물류센터 입고 후 오프라인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배송되어 부적합품을 회수·폐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배송 농산물 물류센터 현장에서 수거하여 당일 검사 결과까지 확인함으로써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기존 정밀검사(건당 4-5일 소요), 신속정밀검사(건당 4시간 소요)
- 새로운 유통체계와 소비패턴에 발맞추어 안전한 농산물만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 추진배경 새벽배송 농산물 시장의 급성장과 안전관리 요구 증가로 새벽배송 (주문: 전일 ~ 24시, 배송: 다음날 ~ 07시) 신선 농산물은 유통·소비기간이 짧아 부적합품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필요
- 주요내용 물류센터 현장에서 수거하여 당일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 체계 운영('23. 2월 ~) 및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설치·운영('23. 9월 ~)
⇒ ① 당일 수거 및 검사 결과 확인 통보
② 부적합 시 사전 차단 및 압류·폐기
- 시행일 2023년 2월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 043-719-6172)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은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수리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 2023년 상반기 개정·시행 예정)

- 전자심사 시스템은 200여개 이상의 검토항목을 디지털 규칙화하여 수입신고 오류, 법령 및 규정 위반여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수입신고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전자심사 결과 검사담당자의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초로 수입된 것이 아닌 경우 시스템을 통해 약 5분 이내에 수입신고확인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전자심사를 통한 자동 수입신고수리는 식품첨가물부터 먼저 적용되고, 향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 **추진배경** 수입신고 증가에 따른 업무과중의 한계 극복 및 신속·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무 자동화 필요
- **주요내용**
 - 통관단계 서류검토 및 신고내용 적·부 판단,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디지털 규칙 기반으로 신속·정확하게 자동화하는 전자심사체계 구축
 - * (절차) 신고내용 자동 검토(전자심사) → 수입신고확인증 자동 발급 → 세관 전송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10)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백신 제품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 전남 화순)’가 본격적으로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백신센터는 지난 2020년 6월 식약처가 설립허가한 재단법인으로, '22년 10월 건물이 준공되어 '23년 상반기부터 백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임상검체 분석 및 품질검사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아울러, 백신센터에 국가 셀뱅크를 구축해 백신 세포주를 보관하고, 세포주를 필요로 하는 개발사에 분양하게 됩니다.
 - ※ 세포주 : 체외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세포로 배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백신 생산용 원료로 사용되는 세포
- 또한, 백신센터에 교육실습동을 구축할 예정이며, 교육실습동이 완공되면 백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교육도 이뤄지게 됩니다.
 - ※ '23년 완공, '24년부터 교육 프로그램 실시 예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사업 본격적 운영
- **주요내용** 백신 제품화 맞춤형 컨설팅, 임상검체 분석 및 품질검사 지원, 백신 생산용 세포주 분양 등 업무 수행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6)

2023년 3월부터 국가 직영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를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 ▣ 국가가 직접 유통업무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유통수수료 절감(20% →15% 내외)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기관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 또한, 올해 추가한 영남 및 호남지역 거점보관소에 더해 지역보관소 2개를 추가로 확보하여 전국 신속 공급체계를 보다 탄탄히 할 예정입니다.
※ ('22년) 서울, 경상, 전라 → ('23년) 서울(직영), 경상, 전라, 충청, 제주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8)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 희귀질환은 질환의 희소성으로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희귀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합니다.
-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만 18세 미만)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료비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 운영

- 추진배경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수술에 필수적이거나 국내 공급이 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 주요내용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공급 및 수요조사 등 모니터링
 - 전국 공급현황에 따른 지역보관소별 입·출고수량 등 총괄 관리
 - 수도권 지역 재고 보관 및 의료기관의 긴급한 공급요청 시 대응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참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 정보·알림 > 고시·지침 >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지원 기준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으로 완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9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합니다.

- 신규 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은 2023년 1분기부터 적용됩니다.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043-719-7344

결핵 예방을 위하여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해드립니다.

-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음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그동안 단기 근로자는 잦은 근무지 변경과 고가의 검진비로 검진이 어려웠으나, 2023년부터 전국 보건소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필요시 예방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정보·알림>공지사항> '22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 **추진배경**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
- **주요내용**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 → 1,165개(42개 추가)
 - 신규 지정 희귀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적용 혜택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0% 감면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130% 미만, '23년~) 및 재산기준 충족 대상자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후 나머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시행일** 2023년 1분기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안내

- **추진배경** 최근 돌봄시설 등에서 결핵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기간 종사자에 대한 검진 지원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중 취약계층*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 임시일용직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 (지원 내용)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 (사업수행기관) 전국 보건소
- **시행일**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검진일정 상이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76

영유아에서 로타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위장관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도입을 추진합니다.

-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의 급성설사를 유발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예방접종으로 위장관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에서 로타바이러스 장염 발생과 유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생후 2~6개월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2~3회, 백신별로 다름) 접종을 국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 도입

- **추진배경** 생후 2~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을 지원함으로써 가계 비용 부담 경감, 감염병 퇴치 기반 강화
- **주요내용**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사업 도입
 - (사업 대상) 생후 2~6개월 영유아
 - ※ 최대 생후 8개월 0일까지 접종 완료
 - (접종 방법) 2~3회 경구투여 방식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 정확한 날짜는 추후 보고자료를 통해 발표 예정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고용



<https://whatsnew.moef.go.kr>

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153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시행일 : 2023년 3월 28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를 마련합니다.

•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24

2023년 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22. 9. 27. 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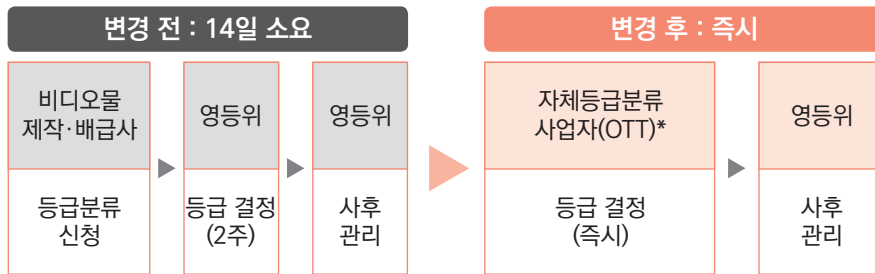
- 추진배경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행일 2023년 3월 28일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044-203-2436)

2023년 3월 2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2. 9. 27.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기간이 없어지고, 지정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분류를 하게 됩니다.



* 문체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참고 문체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 콘텐츠의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져”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 추진배경**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 대응, 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추진
*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 : ('15년) 4,339건 → ('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 ('21년) 16,167건
- 주요내용**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최장 14일)
 - (개선)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즉시)
- 시행일** 2023년 3월 28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2)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해당 교육기관은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 강사 등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지자체 교육기관들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육기관 보상금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방식)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대면수업) 12원, ▲(원격수업) 32원
 - (종량방식)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 저작물 이용량 × 교육생수
- * 포괄방식/종량방식은 교육기관에서 선택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 시행

- 추진배경**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차후 문체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물을 안심하고 이용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국가·지자체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포괄방식(수강생 수) 또는 종량방식(저작물이용량)별로 보상금 납부
 -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적용 보상금기준 마련
 - (포괄방식)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대면수업) 12원, ▲(원격수업) 32원
 - (종량방식)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 저작물 이용량 × 교육생수
- * 종량방식 보상금 금액 기준은 기존 대학 수업목적보상금 기준(문체부 고시)과 동일
- 시행일** (보상금기준 고시일) 2023년 1월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 지원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042-481-4811)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22. 5. 3. 일부개정, '23. 5. 4. 시행

■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객 대상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경우, 감소되는 수입은 문화재 관리 및 국민의 문화유산·자연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 지원

- **추진배경**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공개 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음에도 징수주체와 국민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향유권 증대
-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하는 경우 감소되는 수입에 대해 문화재청에 신청할 수 있고
 -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됨
- **시행일** 2023년 5월 4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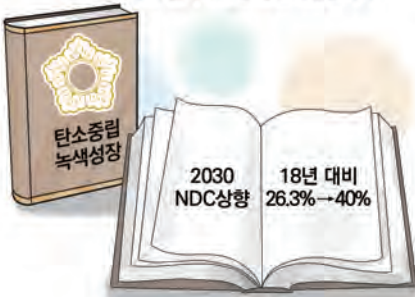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일 : 2023년 3월 25일

Before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였습니다.



After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2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을 하여왔습니다.



After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됩니다.



3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63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시행일 : 2023년 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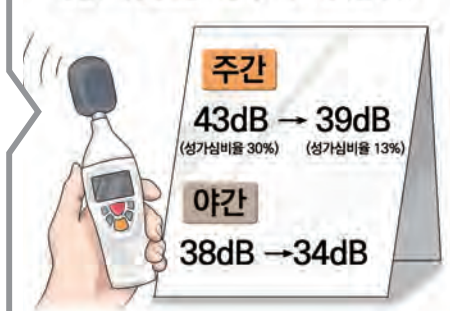
Before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43dB, 야간 38dB였습니다.



After

국민 실생활 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4dB씩 강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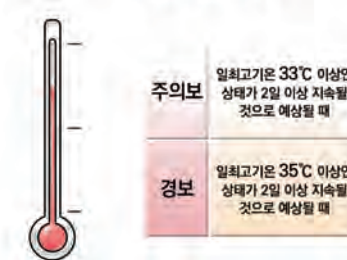
4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169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 시행일 : 2023년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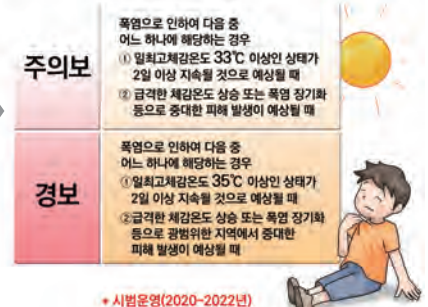
Before

기존에는 기온만을 기준으로 하는 폭염특보를 운영하였습니다.



After

기온과 함께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 운영을 시행합니다



https://whatsnew.moef.go.kr

5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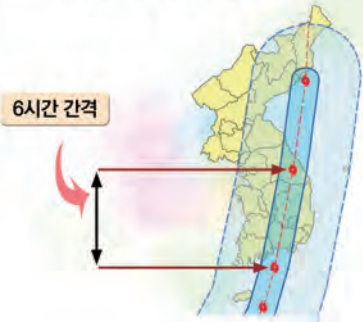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70

우리나라 영향 태풍정보 상세 제공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Before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정보의 예보간격을 6시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After

태풍이 한반도 통과 예상 시에는 예보간격을 3시간으로 보다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6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171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

시행일 : 2023년 2월

Before

종전까지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기상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After

교통안전 지원을 위한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부 기후전략과 ☎ 044-201-6647

2023년 3월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 수립·시행됩니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은 '22.3.25일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 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 국가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로드맵(감축목표) 및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합니다.
 - *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27백만톤CO₂eq) 대비 40% 감축
- 정부 각 부처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배경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로드맵(감축목표) 및 감축대책,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시책 등을 포함
- 시행일 2023년 3월 25일(잠정)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1)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하여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22.10월말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기폐차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확대 시행

- **추진배경**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주요내용** 배출가스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5)

2023년 1월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됩니다.
※ 직접 충격 소음 최고소음도(주간 57dB 야간 52dB) 및 공기 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은 현행 유지
-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 **추진배경** 공동주택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나, 현 기준이 실생활 성가심 정도 및 국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층간소음 문제 심화
- **주요내용**
 - (개정내용) 기존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
 -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
- **시행일** 2023년 1월 2일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환경부 기후적응과 (☎ 044-201-6953)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 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공병, 종이(서적 등)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거 거점) 인천, 성남, 고양, 광주, 의왕, 여수, 해남, 대전 등 15개 지자체가 지정한 관공서, 종교시설, 대형 마트 등 119곳에서 운영
-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립되어 매월 지급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 추진배경** 국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현행 인센티브 지급 분야 외에 자원순환분야 실천항목 확대
- 주요내용**
 -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시 300원/회 인센티브 제공
 -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시 100원/kg 인센티브 제공
 -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 반납 시 1,000원/건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044-201-6690)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업·금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 동 지침에 따른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조달받은 자금은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녹색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본 조달에 동력이 생기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 추진배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녹색투자 촉진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필요
 - * EU Taxonomy는 '22년 1월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시범사업('22)을 거쳐 '23.1월 정식 시행
- 주요내용**
 - (개념)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
 -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개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 *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먹는샘물 無 라벨 날개 제품 판매 허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84)

먹는샘물 무(無)라벨 날개 제품의 판매가 허용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시행)

- 지금까지는 먹는샘물 제품정보를 용기에 라벨로 부착하였으나, 앞으로는 QR코드 이용방식을 도입하여 무라벨 날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필수정보는 용기몸통 또는 병마개에 표시하고, 기타정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를 이용하여 제품정보 제공
- QR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용기(PET)에 부착하는 라벨의 폐기물 발생량(21년기준 약 연간 1,843톤)을 줄일 수 있고, 용기에서 라벨을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하는 소비자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QR코드 방식은 기존의 라벨 방식과 3년간 병행하여 운영한 후 QR코드 방식으로 단일화할 예정입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시행

- **추진배경**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더불어 업체 및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먹는 샘물 표시기준 관련 제도개선
 - *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함으로써 업체의 제작·유지관리 용이 및 라벨 정보 가독성 및 분리배출시 라벨제거 과정이 없어져 소비자 편리 증대
- **주요내용**
 - 용기 또는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도입
 - 유통기한 표시방식 추가(예시 '0000.00.00 까지')
-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예정)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1)

2023년 6월 11일부터 야생동물이 건축물·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은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게 됩니다. (‘22.6.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신설)

- 또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환경부가 실시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의 충돌·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화

- **추진배경** 건축물·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추락하여 폐사하는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관리 의무화
 -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요청
-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 (EEXI,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도입되는 규제로서 '99~'09년 건조선박 평균값 대비 CO₂ 배출량 약 20% 감축 필요

* 2023.1.1.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규제 만족 후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함

△ (CII,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19년 대비 '20~'22년 매년 1%, '23~'26년 매년 2% 총 11% CO₂ 배출량 감축 필요

* 매년 선박운항 탄소집약도 지수를 계산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항정보를 '24년 3월 31일까지 최초 제출)

■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2년부터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선사들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23년 15.4억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3년부터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규제, 미리 준비하세요!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 **추진배경** 국제협약(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제도가 도입 되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이행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 하여야 하고, '23년 1월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정기, 중간) 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함
 -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매년 선박운항탄소 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2023년 이후 첫 선박검사부터 적용)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493)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가 정식 운영됩니다.

■ 기존의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를, 국민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기온과 함께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5월부터 달라진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합니다.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날씨)기상특보>특보현황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

- **추진배경** 기온과 함께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 실시 ('20년 5월~)
- **주요내용** 실질적 폭염 피해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 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
- **시행일** 2023년 5월 15일(잠정)

우리나라 영향 태풍정보 상세 제공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 064-909-3965)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태풍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태풍정보를 통해 3시간 간격으로 태풍 예상 위치, 강도 등을 제공하여 상륙 이후의 태풍 위치를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태풍 상세정보의 최근접 예상 시각과 거리를 제공하는 지점들을 확대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선택폭이 커집니다.
- 개선된 태풍정보와 추가 지점들에 대한 정보는 6월부터 제공되며, 날씨누리(웹/모바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태풍)상세정보 및 통보문

한반도 영역에 대한 상세한 태풍정보 제공

- **추진배경**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상륙 이후의 태풍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태풍정보의 예보간격 상세화
- **주요내용**
 - 한반도 통과 예상 시 태풍정보의 예보간격을 3시간으로 상세화
 - 태풍의 최근접 예상 시각 및 거리 등의 태풍 상세정보 제공지점 확대
- **시행일** 2023년 6월 30일(잠정)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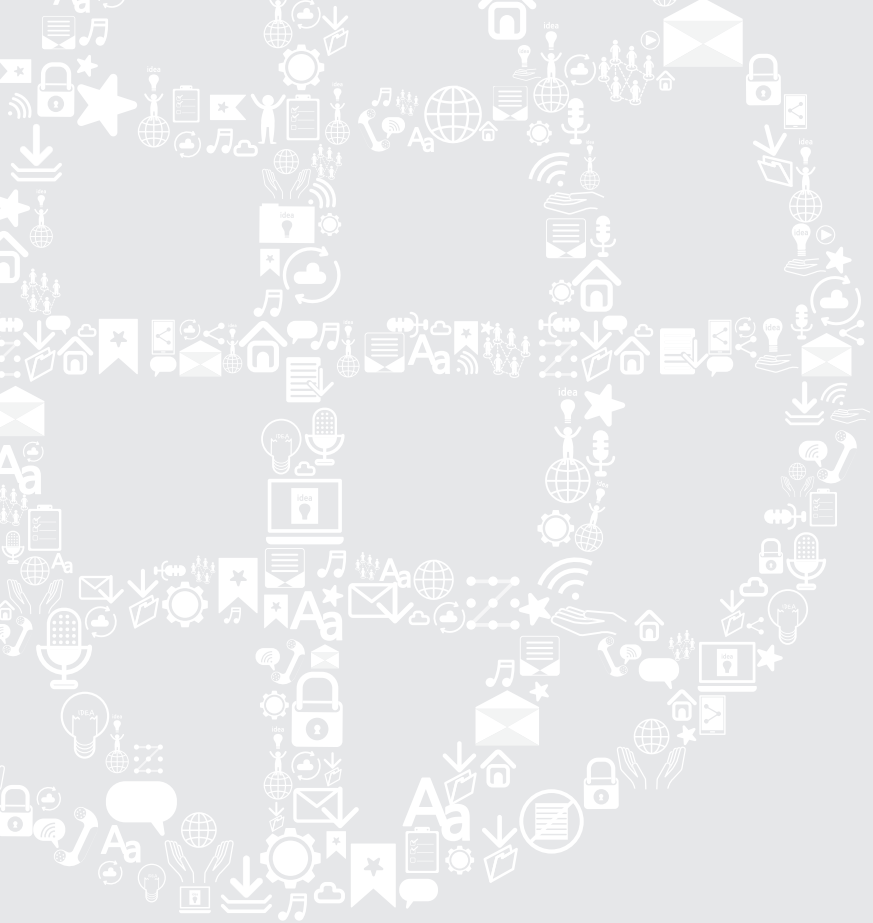
기상청 관측정책과 (☎ 042-481-7341)

2023년 상반기부터 교통안전 지원을 위한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23년 2월부터 운전자의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시험 운영되며, 7월부터는 안개 발생 가능 정보가 추가로 시험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결빙과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과 실효성 있는 도로기상 정보 제공 추진
- **주요내용** 전국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관측 및 실행 기반의 기상정보 제공
 - 중부내륙고속도로에 2022년 관측망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시험 서비스 추진
- **시행일** 2023년 2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https://whatsnew.moef.go.kr>

1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178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 (상품) 양국은 자국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
- (서비스·투자) 양국은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
- (법적) 산업·농수임업·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전파 분야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044-202-4923)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전파 관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 분야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맞춤형 5G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는 도입 시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로봇·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어 이용되는 단말기
 - 이를 통해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 허가·검사 처리기간(약 2달)이 절감되어 이음5G 서비스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급변하는 방송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위성방송국 재허가 심사 주기가 7년으로 늘어나 심사를 준비하는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장비재배치, SW변경 등에 따른 변경 검사 시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표본검사 적용을 통해 기지국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커버리지 확대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통신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용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연납고지서를 발행하고, 연납고지서 납부만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이 가능해지고,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정비를 통해 SNS 등을 통한 전자고지도 도입합니다.
 - ※ 전파사용료는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의 감면 제공
 - 이를 바탕으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전파사용료를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납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파사용료 부담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 044-202-62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44-202-6467)

2023년 1월 12일부터 민간클라우드 이용노력의 의무대상이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지자체 까지 확대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그동안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였으나, 상향입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기관등은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획득한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을 추가 운영되고, 수수료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 일부 지원 예정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 **추진배경**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전파 관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분야 규제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외제 적용
 -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2년 12월말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 **정의** 국가·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보안성을 검증하는 제도('16년~)
- **인증대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 **인증기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
-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 044-203-5755)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됩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한-인니 CEPA는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FTA*로, 동 협정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미양허되었던 품목들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 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한-캄보디아 FTA: '22. 12월 발효

■ 이를 통해 인니 수출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감축 혜택 확대는 물론, 그간 미개방되었던 인니 온라인게임 및 문화컨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산업통상부 홈페이지)보도자료)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1.1.)와의 FTA 연달아 발효
www.fta.go.kr 홈페이지

한-인니 CEPA 주요내용

- 추진배경 아세안 최대시장 인니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아세안지역 FTA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상품) 양국은 자국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
 - (서비스·투자) 양국은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
 - (협력) 산업·농수임업·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 협의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52)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7일부터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 품목*에 대해 KC 인증(안전확인신고)이 시행됩니다. ('22.9.6.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 시행)

- * ① (저속전동이륜차) 핸들 및 좌석이 부착되어 있고,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
- ②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기존 개인형이동장치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

■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안전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속전동이륜차' 등 2종 품목 KC 인증 시행

- 추진배경 개인형이동장치(PM) 활용 증가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지원을 위해 안전기준 도입 및 KC 인증제도 시행
- 주요내용 「전동보드 안전기준」내 제5부 저속전동이륜차, 제6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세부 안전기준 추가
- 시행일 2023년 3월 7일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82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2.10.18.)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대한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됩니다.

- 그간,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사용전점검은 2개의 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으로 이원화 운영되어, 인력 및 점검장비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9일 부터 적용됩니다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044-203-4934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축규제 대상이 오존층 파괴물질에서 수소불화탄소(HFC)까지 확대됩니다.

-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 HFCs)는 불소 및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유기 화합물로, 주로 자동차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데,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감축을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2016년 10월에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하였고, 국내에서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수소불화탄소가 감축규제 물질에 포함되며, 감축이행은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감축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 등 대체물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 저금리 융자, 표준모델 개발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공포(22.10.18.)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 **추진배경**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
- **주요내용**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추진배경**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 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한 '키갈리개정서' 채택 ('16.10월)
- **주요내용** 감축규제 대상인 '특정물질'의 범위가 '오존층 파괴물질(HCFC 등)'에서 '수소불화탄소(HFC)'까지 확대
-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감축 이행 : 2024년 1월 1일)
 - 감축일정 : ('24) 동결 → ('29) 10% 감축 → ('35)30% 감축 → ('40) 50%감축 → ('45) 80% 감축

집단에너지 사용자시설 지원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044-203-3908)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사용자시설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집단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단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 **추진배경** 집단에너지 도입이 약 30년 경과됨에 따른 사용자 시설 노후화
- **주요내용**
 -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집단에너지시설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제1항)
 - 사업자 또는 사용자 시설이 집단에너지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6조제1항)
- **시행일** 2023년 1월 19일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6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14(22.8.23. 개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주요내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 **확대지원
개시일** 2023년 1월 1일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3.4.19. 시행)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법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www.ultari.go.kr)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 법률 일부개정

- **추진배경**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애로사항인 법률비용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피해 신고를 전자문서로 확대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분쟁 정책보험 지원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
-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481-5920)

2023년 2월 15일부터 기업이 직무발명 관련통지시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기업현장에서 직무발명 관련통지(신고, 승계, 보상통지 등)는 사내문서망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그간 발명진흥법에서는 일반문서만 통지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전자문서 통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 시행 후 기업과 종업원 간 직무발명 관련통지시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어, 기업실무 편의성 향상 및 법적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 **추진배경** 기업 현장에서 직무발명 관련통지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발명진흥법에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 **주요내용** (신고·승계·보상통지 등) 직무발명 통지방식을 서면으로 수정하고, 전자문서 통지근거를 포함(발명진흥법 §12, §13②, §15②, ④, §16조의2④)
-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 **시행일** 2023년 2월 15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377)

2023년 2월 4일부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 부분거절 제도가 도입됩니다.

(‘23.2.4. 시행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분거절제도 시행 전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
- 개정내용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377)

2023년 2월 4일부터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됩니다.

(‘23.2.4. 시행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을 상품 보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
 - ** 이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음
- 개정내용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포함, 국제상표 등록출원 제외)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법령및조약)최근개정법률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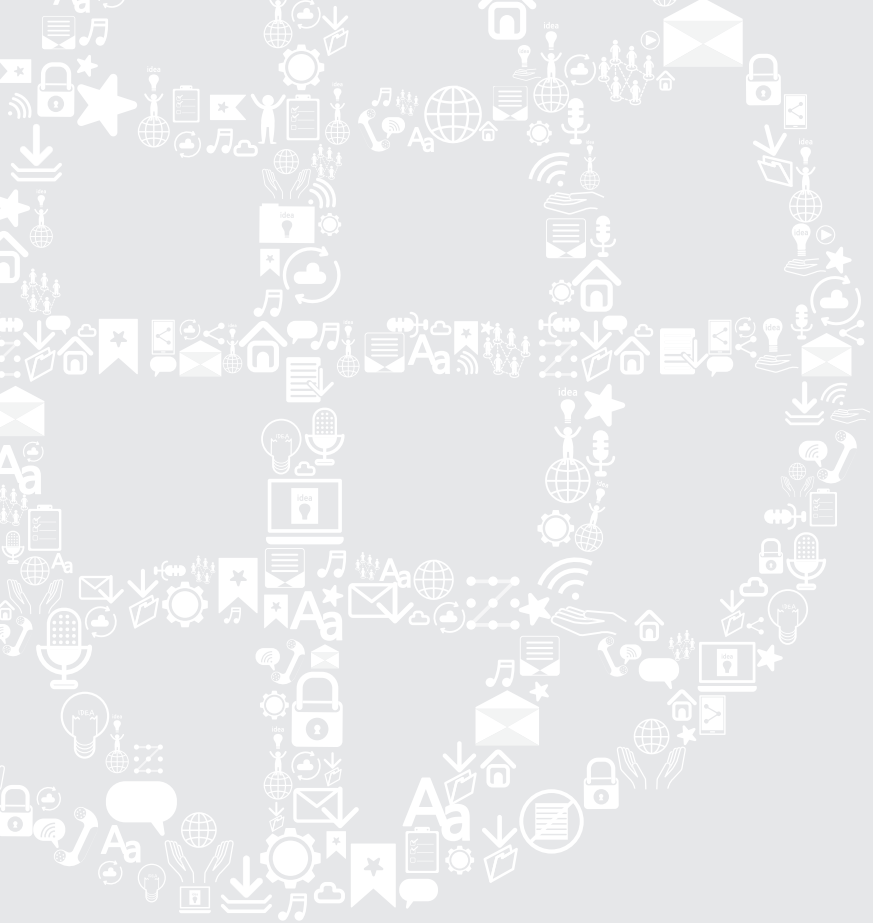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상표등록출원 절차-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등 출원인의 권리확보 기회 제고
-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출원인이 보정 등 대응을 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이 가능
- 시행일 2023년 2월 4일

- 참고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법령및조약)최근개정법률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2.1.12.)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 추진배경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거절결정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지정상품·상표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
- 시행일 2023년 2월 4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044-201-4350

2023년 말부터 현재 GPS의 위치오차(15m~33m)를 1~1.6m 이내로 축소하여 전용위성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본격 시행 됩니다.

*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카스) : GPS의 오차를 축소해(15~33m → 1~1.6m) 위성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시스템의 한국형 명칭

■ 세계 7번째로 구축 중인 KASS*는 '23년말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현재 위치정보가 필요한 타 분야에도 선제적 시험·활용이 가능하도록 '22.12월부터 KASS 신호를 우선 제공** 중에 있습니다.

* KASS 신호 1차 제공('22.12.) → 안정화 단계 및 항공인증을 거쳐 항공용서비스('23.말)

■ 이를 통해, 항공교통분야 외에도 UAM·드론·내비·안전·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분야에서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23일 새벽 6시 대한민국 항공위성 1호기 발사'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 추진배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성항법 표준에 따라 전 국토에 1~1.6m이내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구축 중
- 주요내용
 - (주요목표) 항공안전 강화, 수용능력 증진 등을 위한 항공용서비스를 주요 목표로 추진 중, 정밀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타 분야 확산도 추진
 - (구축규모) 전국 지상시스템(기준국7, 위성통신국2, 중앙처리·통합운영국2) 및 정치궤도 위성 2기
- 시행일 2023년 말

항공기 소음단위 및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2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항공기 소음단위가 기존 웨클(WECPLN)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B 단위로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전국 6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인천, 울산, 여수)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 고시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내용은 2022년 12월 30일 각 지방항공청별로 전자관보에 게재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22.12월 중 배포 예정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 추진배경 공항 소음단위 변경시행('23.1.1.)에 따른 6개 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단위가 기존 웨클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Lden 단위로 변경('23.1.1.)됨에 따라 전국 6개 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고시
- 시행일 2023년 말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 (☎ 044-201-5136)

2023년 5월 16일부터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가 시행됩니다.
(*22.11.15.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란 신규 철도·도시철도 건설 시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거리 최소화 등 환승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그간 환승편의에 대한 검토는 노선의 배치, 역사 위치 등이 결정된 실시계획 승인(공사 직전) 단계에서 이뤄지다 보니 환승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면 철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승편의성을 고려하게 되어 철도 이용자의 환승거리와 환승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이용자의 환승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뉴스>소식>카드뉴스>[카드뉴스]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으로 환승이 확~ 편리해집니다.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 **추진배경** 국내 대도시권 주요 환승거점 107곳 환승서비스 수준 분석결과, 74곳이 환승거리 180m 이상 등 환승여건이 열악(21.4,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 **주요내용**
 - (검토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검토시기) 도시철도 및 철도노선 사업 기본계획 단계
 - (검토대상) 대도시권에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철도역의 건설·개량사업
 - (평가내용)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노선 배치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
 - (절차) 환승편의성 검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검토내용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
-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00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시행일 : 2022년 1분기

Before

그동안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After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시행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01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Before

종전에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힘써왔습니다.



After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02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시행일 : 2023년 1월

Before

종전에는 청년농 대상 융자 지원 조건이 제한적이었습니다.



After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03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Before

자연재난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일부자금(4개)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금융지원을 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큰 피해 발생 농가가 대출한 모든 정책자금(54개)에 금융지원 혜택을 전면확대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0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Before

'17~'19년 당시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는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fter

'17~'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기본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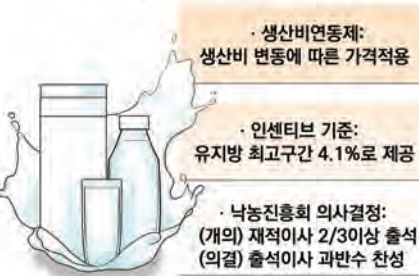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05

낙농제도 개편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종전 낙농제도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감소,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After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제도가 개편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06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시행일 : 2023년 12월

Before

기존에는 16개 농협 공판장 에서 일부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를 시범 실시 하였습니다.



After

농산물 도매거래 혁신을 위해 전국단위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출범합니다.



8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07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시행일 : 2023년 1월

Before

그동안 논활용직불제를 시행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After

쌀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9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220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시행일 : 2023년 1월

Before

종전에는 국내 연안 45개 정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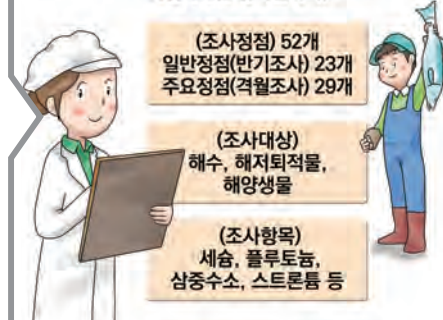
After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하여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를 강화합니다.

(조사정점) 52개
일반정점(반기조사) 23개
주요정점(격월조사) 29개

(조사대상)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항목)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10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221

잡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시행일 : 2023년 1월

잡사는 어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시행합니다.

•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공간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 사업을 지원합니다.



11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222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시행일 : 2023년 1분기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을 시범실시합니다.

• 여객선, 도선 등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항로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원금-이자)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연 1% (임차료) 표준임차료 50%
- 또한,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업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 마련
-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 희망 농지를 농지은행관리원에서 매입하여 선임대후매도 계약 체결
 - 청년농업인이 최장 30년간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 분할납부
 - 청년농업인이 원리금 완납 시 농지 소유권 이전
- **시행일** 2023년 1분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 또한,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업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 **추진배경** 청년농의 영농 초기 소득불안 완화
- **주요내용**
 - (선정규모) 연 2,000명 → 연 4,000명
 - (지급단가) 월 최대 100만원 → 월 최대 110만원
 - (진입조건) 부모소득 기준 폐지, 농외근로 허용 확대 등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용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 원 → 5억 원)하고 금리를 인하(2% → 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합니다.
-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 → 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합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4)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됩니다.

- * 「농어업재해대책법」(’22.6.10. 개정, ’22.12.11. 시행)
-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됩니다.
 - * (기존) 4개 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으로 한정
-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업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청년농 대상 용자 지원 조건 개선

- 추진배경 담보·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용자자금의 지원 조건 개선
- 주요내용
 - (후계농자금) 지원한도 상향(3억 원 → 5억 원), 금리 인하(2% → 1.5%), 상환기간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 (우수후계농자금) 금리 인하(1% → 0.5%)
- 시행일 2023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예정)”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대상확대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재개 도모를 위한 간접지원(용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자금을 확대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개정(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
: (현행) 영농자금 → (개정) 영농자금을 포함한 장관이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큰 농업인(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에게 지원되는 금융지원(1~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자금을 전체로 확대
 - (기존) 4개 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
 - (개정) 54개 자금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용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 시행일 2022년 12월 11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2)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2.10.18.)

■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

■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배경**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 구제 필요성 공감
- **주요내용** 「농업·농촌 공익직불법」개정을 통해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 삭제
-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낙농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0)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제도가 개편됩니다.

■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됩니다.

*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

■ 또한,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한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가축비 절감 가능

■ 이사회 개의를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낙농진흥회 이사회, 낙농제도 개편안 의결”,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

낙농제도 개편

- **추진배경** 시유 소비감소 및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감소, 수입산 유가공품 소비 증가로 인한 원유 자급률 하락 등에 따라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어 제도개편 필요
-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①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②원유 인센티브 구조 조정, ③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구조 등 개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5)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도매거래 혁신을 위한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출범합니다.

-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판매자·구매자들은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우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여 농산물 거래·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산물온라인거래소 통합플랫폼 구축('23년 12월, 잠정)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 **추진배경**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거래 및 물류 효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농산물 판매자는 온라인으로 출하자의 농산물 사진, 품질, 규격을 제공하고, 구매자는 온라인상에서 전국의 농산물을 비교하여 도매거래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및 기타 유통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 **시행일** 2023년 12월(잠정)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 044-201-2915)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또한 이모작을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2023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추진배경** 주곡인 쌀은 과잉생산 구조로 면적조정이 필요한 반면, 밀·콩 등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전략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필요
- **주요내용** 기존 논활용직불대상작물이나 하계 논콩·가루쌀을 단일재배하거나,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 (하계)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지급
 - * (단일생산) 기존 논활용직불대상 동계작물은 50만원/ha, 논콩·가루쌀 100만원/ha, 하계 조사료 430만원/ha 지급
- **시행일** 2023년 1월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044-201-1552)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을 폐지합니다.

- *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정비 및 이전, 유해시설 철거 공간의 활용 사업, 그 밖의 일부 정주환경 개선 사업(마을안길·하천복원, 마을숲·완충 녹지 조성 등)
- ▣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 수목식재 비용을 총사업비 이내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시·군의 수요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 * (기존) 수목식재 비용 지원을 총사업비의 10% 기준으로 제한
- ▣ 해당 내용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 **추진배경** 마을 숲, 공원 등의 조성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주요내용**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 수목식재 비용을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제한 없이 시·군의 수요에 따라 지원 추진
 - (기존) 총사업비의 10% 이내 지원 → (개선)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농가의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8,800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 * (기존) 1일 인건비 지원 단가 8만원, 지원금액 56,000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추진배경** 사고·질병이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인상,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단가 인상
- **주요내용** 취약농가 지원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지원단가를 8.4만원으로 인상
 - 기존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기준 56,000원 지원
 - 확대 : 1일 인건비 8.4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기준 58,800원 지원

※ 지원조건 :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이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2)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3)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4) 여성농업인이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경우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농가의 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됩니다.

- 대상품목 3개(귀리, 시설펍감자, 양상추)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품목이 70개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2가지 발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 품목을 파종·정식할 때 전작 품목의 식물체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농가 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 (기존) 전작 식물체의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배경**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 유도
- **주요내용**
 - '23년 신규 도입 품목 3개(귀리, 시설펍감자, 양상추)를 포함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
 - 발작물 전후작 재배농가가 후작 식물 재배 시 전작 식물체의 일부가 남아있어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가입기준을 완화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 사육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이 개선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가에 확대 적용합니다.
- * 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 이에, 전국 돼지사육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 * 8대 방역시설: ① 전실, ② 외부울타리, ③ 내부울타리, ④ 방역실, ⑤ 물품반입시설, ⑥ 입출하대, ⑦ 방충시설·방조망,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23년까지 설치)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 개선

- **추진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돼지사육 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 개선
- **주요내용** 모든 돼지사육업 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8대 방역시설 구비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 (특례) 전실·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가 확인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의 대체시설을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인정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적용일: 2023년 1월 1일)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됩니다.

* 「수의사법」 개정(’22.1.4.), 시행(’23.1.5.)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内部臟器)·뼈·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및 수혈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 **추진배경**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제고 및 진료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 동물병원 개설자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 (게시방법)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가능
 - 동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수술등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 * (예외) 수술등중대진료 지체 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 **시행일** 2023년 1월 5일
 - * 단,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의 경우 2024년 1월 5일부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044-201-217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획부 (☎ 061-931-0811)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공모가 1월에 일괄 공고되고 사업 신청에 필요한 여러 증빙서류도 정보제공 동의로 한 번에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별 공고기간도 2주로 통일(필요할 경우 1주 추가)하고, 상시모집 사업은 접수마감일은 매월 10일로 통일하였습니다.

■ 신규사업 등 일부 예외 사업도 2월 내에는 공고하도록 하여 지원사업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 기업DB정보 취급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변조·누락·오류 등을 방지 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사업공모가 1~4월에 걸쳐 분산 공고되고, 사업별 각종 신청 증빙자료를 중복 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업계 어려움 발생
- **주요내용**
 - (원칙) 사업공모 1월 중 일괄 공고(2주간), 정보제공 동의로 증빙자료 자동 연계
 - (예외) 신규사업 등은 2월까지 공고, 공고기간은 필요시 1주 연장 가능
- **시행일** 2023년 1월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4)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21.11.30.), 시행(22.12.1.)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가 가능하며, 지정받지 않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해 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표시 중단·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또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에도 표시 중단·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189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054-429-4137)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됩니다.

* 「농약관리법」 개정(21.6.15.), 시행(23.1.1.)

-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약 항공방제업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8532호, 2022.12.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 통한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만 명인표시 가능
 - 위반시 표시중단·제거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 표시중단·제거 명령 및 명령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 **추진배경** 농약 항공방제의 체계적 관리 및 농약 비산 등의 피해분쟁을 조정하여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주요내용**
 - (항공방제업) 관할 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신고
 - * 위반시 과태료 : (1차) 3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5백만원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 신청
 - * 조정대상 : ① 다른 사람 등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②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농작물에 해가 있는 경우, ③ 방제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등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1896

2023년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22.1.4.), 시행('23.7.5.)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농업기계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 **추진배경**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및 신고된 농업기계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22.1.4.)
- **주요내용**
 - (기본방향)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운영
 - * 신고 주체를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대리점(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 등)과 지역농협으로 지정
 - * (관리방안) 농업기계 생산자가 농업기계 제조번호, 생산연도, 규격 등 농업기계 제원을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입력(신고)
- **시행일** 2023년 7월 5일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농촌 일손 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발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현장 맞춤형 농기계 성능 고도화, 지역별·작물별 재배양식 표준화 및 맞춤형 기계화 기술 연구 등 기계화 표준재배 모델 현장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농촌 일손 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발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 지원
- **주요내용**
 - (현장 맞춤형 농기계 성능 고도화) 기 개발 농기계의 현장 활용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민간수요 기반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현장 실증) 권역별 거점대학,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작물별 재배양식 표준화 및 맞춤형 기계화 기술 개발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농식품분야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타 산업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적용·연계하는 시장 창출형, 타 분야 선도기술을 접목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현장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 수출 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국내 농식품 자원(농기계, 농자재, 가공제품, 소재, 원료 등)의 수출 연구 지원을 위한 전략품목 수출 활성화, 농식품 관련 지표 발굴(국제 표준 등) 및 안정성 강화 연구를 위한 농식품자원 세계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업분야 융복합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타 분야 선도기술을 농식품 산업에 적용·연계하기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형 R&D 지원
- **주요내용**
 - (시장 창출형) 농식품 분야 융합형 신산업·신시장 창출 가능성 제고를 위해 타 산업(부처)이 보유한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적용·연계 지원
 - (현장문제 해결형) 타 분야 선도기술을 접목하여 농업·농촌에 상존하고 있는 고질적 현안 및 난제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관련 사업 공고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추진배경**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한 실증 등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국제 공동연구 지원
- **주요내용**
 - (전략품목 수출 활성화) 국내 농식품 자원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한 산업화 국제 공동연구 지원
 - (농식품자원 세계화) 국내 농식품 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지표 물질 발굴 및 안정성 강화 연구 등 국제 공동연구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7)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을 중심으로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대상을 45개 정점에서 52개 정점으로 확대합니다.

- 방사능 등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정점을 확대하여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 044-200-6174)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 (유형1)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어촌은 역동적인 경제·생활서비스의 거점(25개소, 개소당 300억원)으로, (유형2) 주변 지역은 정주·경제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생활권(175개소, 개소당 100억원)으로, (유형3) 소규모 어촌은 낙후되어 어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시설과 안전시설을 개선(100개소, 개소당 50억원)하겠습니다.
- 2023년에는 1차년도 사업대상지 60개소(유형 1 5개소, 유형 2 35개소, 유형 3 20개소)를 선정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보도자료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 **추진배경** 수산물 생산 해역 등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주요내용**
 - 조사정점 : ('22) 45개 → ('23) 52개
 - * 주요정점(격월조사) : ('22) 22개 → ('23) 29개
 - 조사대상 :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 조사항목 :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 **시행일** 2023년 1월(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고시 개정)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어촌에 총 3조원 투자…‘잘사는 어촌시대 연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추진배경**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지속적인 어촌·어항재생사업 필요
- **주요내용**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공간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 지원
- **사업기간** 2023년~2027년(5년간)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8

여객선과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형 선박을 투입하여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수단을 확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도서에 선박을 직접 투입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항로를 운영하고, 항로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23년 10개 항로를 시작으로, '27년도에는 35개 항로까지 확대하여 전국 소외도서 주민들에게 보편적 해상 교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방해·교란 행위 금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5

2023년 4월 19일부터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하는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사업 시범실시” 보도자료(게시 예정)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 **추진배경** 여객선·도선이 운항하지 않고 연육교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통수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여객선, 도선 등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항로운영비용 지원(인건비, 유류비 등)
- **시행일** 2023년 1분기 중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된다(「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법률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2.9.27.)

관찰·관광 시 해양보호생물 위협 및 교란행위 금지

- **추진배경** 선박 등을 이용한 관찰·관광활동으로 인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 위협 및 서식지 훼손 방지
- **주요내용**
 - 관찰·관광활동 시 해양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다음의 행위 금지
 - 해양보호생물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방해·교란 행위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 창구 일원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044-200-5861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창구가 일원화 됩니다.

- 대규모 해양이용·개발 행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기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개선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신규로 협의·평가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일원화(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22.1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 **추진배경**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일관화된 기준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필요
- **주요내용**
 - (기존)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기관은 처분기관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누어 수행 중
 - * (본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본부인 경우 (지방청)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인 경우
 - (개정) 해양 개발 사업 중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시 협의기관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
-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2

2023년 4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 '23.4.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영세 어업인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수산 공익직불제 종류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 후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연령을 완화하여 만 80세 미만까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만 65세~만 75세 → (완화) 만 65세~만 80세(26년까지 한시 적용)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수산직불제법 법령 개정 보도자료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시행

- **추진배경**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통한 어촌소멸 방지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 **주요내용**
 - (대상) 소규모 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
 - (지급액) 120만원
 - (절차)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시행일** 2023년 4월 1일

어구 생애 주기 관리체계 도입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 044-200-5604

2023년 1월 12일부터 어구의 전 주기(생산-판매-사용-수거) 관리체계가 본격 도입됩니다.

■ 첫째, 생산·판매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하고, 불법어구 제작·판매 금지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 (행정처분) 3개월이내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태료) 미신고 등 200만원 이하, 폐업미신고 및 의무사항 위반 등 100만원 이하

■ 둘째,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업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어구실명제가 「수산업법」으로 격상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기존) 어업정지 20~40일 → (추가) 1,000만원 이내 벌금

■ 셋째, 어구의 수거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하여 집중정화가 필요한 해역에 조업을 중단한 뒤 부설한 어구를 모두 회수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어구 생애 주기 관리체계 도입

- **추진배경**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구의 생애 전 주기(생산-판매-사용-수거) 관리체계 도입
- **주요내용** 어구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 어구실명제 벌칙 강화, 어구일제회수제도 시행 등 각 단계별 어구관리 강화 제도 도입
-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제공 실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93

2023년 4월 1일부터 휴대폰으로 내 가족이나 친척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 있더라도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절차 필요)

* General Information Center of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 기상특보 등 해양안전 관련정보를 통합·연계하고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

■ 철도, 버스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발·도착 시간 및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제는 여객선도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주민이나 여행자 등에게 제공합니다.

*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 연안여객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바일 서비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선박위치정보 확대제공 실시(예정)

참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보도자료)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 실시(예정)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제공 확대

- **추진배경** 실시간 선박위치정보의 확대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실시
- **주요내용** <선박위치정보 제공서비스>
 - (신청·승인방법)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웹사이트의 ‘우리가족배 위치알림 서비스’ 메뉴에서 원하는 선박의 위치정보 제공 신청
 - * 신청 → 선박소유자에게 알림문자 자동 발송 → 선박소유자는 문자의 URL 링크를 통해 ‘승인’
 - (제공방법) GICOMS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해당 선박의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
-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
 - (이용방법)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 메뉴 선택, 지역·항로별 검색하여 확인 가능
 - *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 해양사고 현황·통계 등의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 **시행일** 2023년 4월 1일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18)

2023년 1월 5일부터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 「해사안전법」 개정, '22.1.4.

-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선박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해사안전법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는 이행명령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선장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도 신설
 - 선박소유자는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도 신설
- 시행일 2023년 1월 5일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 추진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72)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발생빈도 증가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 계획”을 추진합니다.

-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 계획”을 바탕으로 '32년까지 부산항, 평택·당신항 등 총 39개 항만(65개소)에 약 4조원 규모의 외곽시설 및 재해취약지역을 보강·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3년 상반기 항만기본계획 변경 후 적용되며, 사업별 중요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후변화 대응 안전항만 구축” ('23.2. 보도자료 배포 예정)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 계획

- 추진배경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발생빈도 증가 등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안전항만 구축
- * 심해설계파 개정('19), 설계파 산정방식 개선('20), 설계파 재현빈도(50년→100년) 개정('21)
- 주요내용
 - (재해안전항만)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재해에 대비할 안전항만 구축
 - (외곽시설) 전국 항만 외곽시설 대상 안전을 미확보 시설 43개소 보강
 - (취약지역) 침수피해지역 및 침수피해 예상지역 22개소 정비
 - (추진전략)
 - (스마트 안전항만) 자동제어기술 도입(승강식 방호벽 등)으로 신속 대응 항만 구축
 - (상생협력 안전항만) 방재언덕 등을 활용하여 친수·문화공간 제공 항만 구축
- 시행일 2023년 상반기(항만기본계획 변경된 날부터 시행)

숲경영체험림 제도 시행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042-481-1815)

2023년 6월 11일부터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시행됩니다.

* '22.6.10. 공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숲경영체험림은 숲경영과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결합하여 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
- 산림의 특성상 소득 창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숲경영체험림 조성은 6월 11일부터 가능하며, 조성자격은 임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면적의 산림과 경력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며, 사유림에서만 가능합니다.
- 또한,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숲경영체험림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장기간 소요되는 임업경영의 단점을 보완하여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
- 주요내용 임업인들이 숲경영과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
-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자원 확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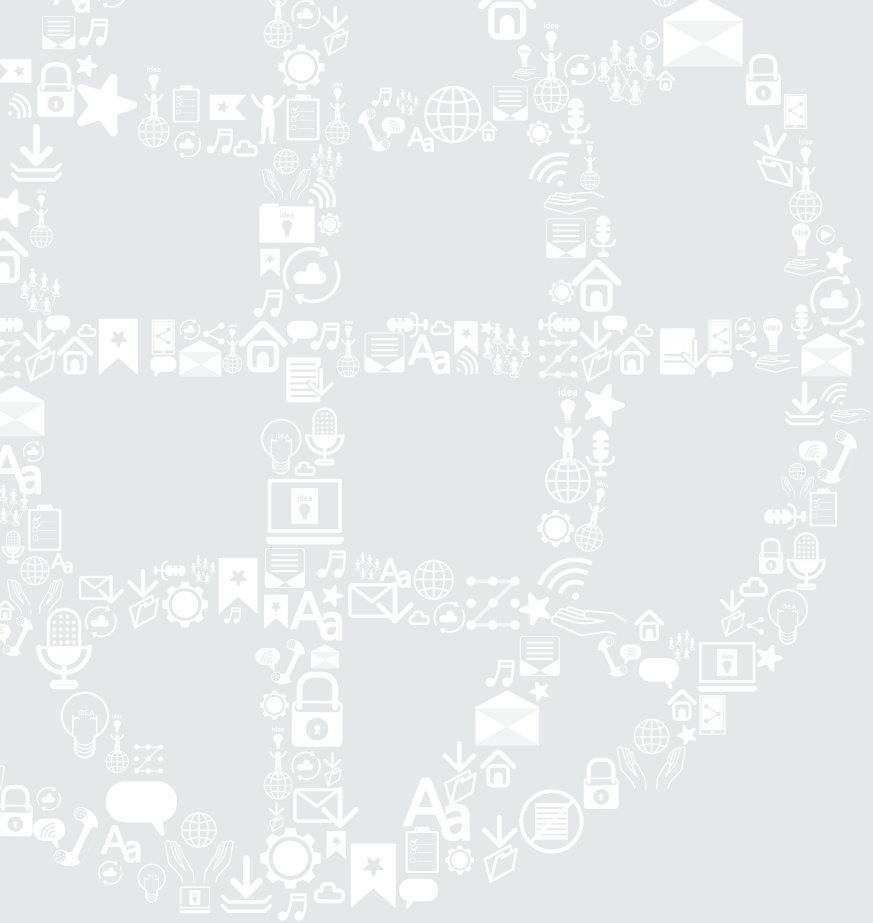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사군 내 임야 매입 시에만 지원했던 정책자금(융자)이 연접 광역 사·도까지 확대됩니다.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귀산촌인 창업자금이 '23년부터 퇴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시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 귀산촌 사업계획서 평가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또한, 상반기(2~3월)·하반기(6~7월) 신청을 받았던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 및 귀산촌인 창업자금이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해집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2023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알림”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자원 확대

- 추진배경 임업 소득향상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임업인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전문 임업인·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임야 매입 가능 지역을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광역 사·도까지 확대
 - 귀산촌 대상자 완화 및 공동사업 가점 기준 신설
 - 정책자금 신청기간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237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Before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22년 병 봉급	
구분	봉급액(원)
병장	676,100
상병	610,200
일병	552,100
이병	510,100

After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3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장 : 1,000,000원
 상병 : 800,000원
 일병 : 680,000원
 이병 : 600,000원

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238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시행일 : 2023년 예비군훈련 시부터

Before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비군에게 동원훈련 보상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After

예비군훈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23년에는 동원훈련 보상비가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3 국가보훈처

자세한 내용은 p.243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

시행일 : 2023년 1월

Before

상이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신분증 확인에 따른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After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이 시행됩니다.



4 국가보훈처

자세한 내용은 p.244

정전 70주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시행일 : 2023년 1월

정전 70주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이 지급됩니다.

•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을 제작·보급합니다.



5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245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시행일 : 2023년 1월

Before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After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 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비교	+89,900 (17.6%)	+127,900 (23.2%)	+189,800 (31.1%)	+323,900 (47.9%)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도 국방예산 확정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추진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주요내용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81.7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병 봉급(병장 기준)	67.6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자선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4)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2년에는 62,000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추진배경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지원 필요
- 주요내용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62,000원 → 82,000원)
- 시행일 '23년 예비군훈련 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14만원(원리금*의 33%)에서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합니다.

* 납입한 원금+은행 기본금리(5%내외)+1% 이자지원금

- ▣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 지원

- 추진배경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
- 주요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3.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단기) 시 원리금의 71%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 * (법령근거)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시] 약 1,289만원 (①+② = 12,897,000원)
 -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내외) + 1% 이자지원금
 = 754.2만원 (720만 + 28.5만 + 5.7만)
 - ② 매칭지원금 = 535.5만원 (원리금의 71%)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선

국방부 건설관리과 (☎ 02-748-5798)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합니다.

- 생활실 거주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합니다.
- '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그 첫해인 '23년 52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현재의 병영생활관이 노후될 때까지는 일정기간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2~4인실 개선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예정
- 이렇게 되면 장병들에게 독립된 생활공간이 더욱 보장되어 병영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선

- 추진배경 일반사회의 주거수준 향상에 맞춰 병영생활관도 질적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2~4인실) 장병 1인당 생활공간을 10.78㎡(4인실 기준)로 확대
 - * 현행 9인실 기준인 7.57㎡ 대비 +3.21㎡(42.4%) 확대
 - (위생시설) 생활실내에 화장실과 샤워실 배치
 - * 현재는 생활실 밖 별도 공간에 화장실·샤워실을 두어 공용 사용
- 시행일 2023년 부터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1)

2023년에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부대 및 운용직위를 확대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 합니다.

- 현재 장기 비상근 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및 정착하기 위해 2023년에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 직위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합니다.
- 또한,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향후, 본 제도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예비군들이 비상근 예비군을 희망하고, 지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확대되고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적용 분야 확대

- 추진배경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
- 주요내용
 - 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운용
 - 육군 예비역(예비역 병·중령)을 대상으로 시험부대와 운용직위를 확대 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하여 시험 운용
 - 운용 직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 시행일 2023년 1월 이후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국방부 장비관리과 (☎ 02-746-5733)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 검사를 통하여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임무수행 여건을 보다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2년도는 부대별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시범 적용하였고, '23년부터 전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모든 군 상용차량·건설기계 안전검사 한 번 더 한다.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계기로 군 보유 상용장비의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 시행
- **주요내용**
 - (기존) 군 상용장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 (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연계 안전조치 강화차원의 안전검사 적용
 - 상용차량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활용 연 1회 안전검사
 - 건설기계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활용 2년 1회 안전검사
 - * 민간 검사제도 적용 및 안전검사 시행을 위한 관리기관 업무협약 ('22.5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044-202-5618)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이 시행되어,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도시철도)을 예우 승차(국가 정산) 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발급 교통카드 사용지역 제한, 교통카드 미도입지역, 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각기 다른 신분증 사용, 승차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에 따른 마찰 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 호환사업이 시행되면 지역간, 교통수단간 이동이 자유롭고 무임대상 신분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해소되어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철도 사용지역이 제한되었던 장애인 복지카드까지 호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효과도 높였습니다.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 **추진배경** 교통복지카드 사용이 지역별, 교통수단별 호환불가로 이용불편 민원 빈발 - 발급 교통카드 이용지역 제한으로 타 지역 무임 신분 확인 후 승차 시 운수종사자와 마찰, 버스 및 지하철 각기 다른 신분증 사용으로 불편
- **주요내용**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스템 개발 적용으로 상이유공자는 단 한 장의 교통복지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버스와 지하철 운영 단말기 내 호환소프트웨어 및 카드 칩 개발(무임코드 삽입)
- **시행일** 2023년 1월

정전 70주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755~6)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분들께 새로운 제복이 지급됩니다.

- 6·25참전용사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새로운 제복을 제작·지급합니다.
- '23년 1월 1일 기준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품목은 자켓, 바지, 넥타이입니다.
- '23년 3월 제작업체 선정 후 구체적인 일정·신청방법에 대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라사랑신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해 재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나라사랑신문 “제복의 영웅들”

정전 70주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 추진배경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을 제작·보급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분위기 확산
- 주요내용
 - (지급대상) 2023.1.1.기준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
 - (지급품목) 자켓, 바지, 넥타이
 - (신청시기·방법) 2023.3월 이후 개별 안내
 - * 사업시행은 '23.3월 업체 선정 이후 진행되며, 추후 구체적 일정·신청 방법 등 재안내 예정
- 시행일 2023년 1월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여,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23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병역이행자 간 차등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 종전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897)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됩니다.

- 그동안은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으로 지급합니다.
- 이를 통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와 정책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이행자 교통비, 자동차 기준 지급으로 개선

- 추진배경 교통환경의 발달과 국민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여비 지급 체계 마련
- 주요내용
 - (제도)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용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산정된 병역이행자 여비를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
 - (대상) 병역판정(신체)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지원(모집) 입영대상자, 모집 전형 응시자, 보충역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기준)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개선)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 + 통행료) 교통비 지급
 - (효과) 자동차운임 단가로 개선하여 병역이행자 만족도 및 정책의 신뢰도 향상
- 시행일 2023년 1월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 그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경기·강원 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됩니다.
- 이를 통해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입영판정검사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대상 부대	2작사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舊 1군)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舊 1, 3군)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로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 주요내용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확대
 - (중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 시행일 2023년 1월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됩니다.

- 그동안은 B형간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등 2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합니다.
- 이를 통해 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체중감소, 간 손상 등 포괄적인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추가 확대

- 추진배경 체중감소, 간 손상 등 포괄적인 신체상태 확인과 고지혈증관련 건강 지표로 활용하여 신체검사 정확도 제고
- 주요내용 병리검사 2종 추가
 - (중전) HIV 검사 등 병리검사 28종
 - (확대) HIV 검사 등 병리검사 28종+2종(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 시행일 2023년 2월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그동안은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6월 예정)부터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신청을 시작하여 '23년 12월에 선발되며,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군 전투력 강화와 병역자원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 추진배경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 부여
- 주요내용
 - (선발대상)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 (복무신청) '23년 상반기(6월 예정)부터 신청·접수
 - (상근선발) '23년 12월에 다음 연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
 - (입영·복무)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 시행일 2023년 상반기(6월 예정)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19)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이 대폭 개선됩니다.

- 그동안은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병역이행자의 편익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유치원 교사도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 간 입영일자 조정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군 조리 특기 지원자격 확대

- 추진배경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확대
- 주요내용
 - (기존) 조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전공자만 지원 가능
 - (개선)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지원 가능
 - * 다만, 신체 제한사항(수지결손 등)에 따라 지원 불가능할 수 있음
- 시행일 2023년 1월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포함

- 추진배경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학기(학년) 중에 현역병 입영이 결정된 유치원 교사의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
- 시행일 2023년 1월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70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은 대학(원) 휴학자가 계절학기를 수강해도 그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 추진배경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이 중복될 경우 연기하도록 개선
- 주요내용
 - 신청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사람(시험일은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신청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신청 방법(경로)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소집점검)연기신청
 - * 구비서류 : 수강 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 시행일 2023년 1월

후속합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20

후속합정 건조업체 선정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 합정은 복합 무기체계로서 탑재 무장 및 장비에 대한 체계통합 능력이 건조업체 선정의 주요 평가요소가 되어야 하나, 현행 적격심사 방식으로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제한되고 최저가 경쟁 심화로 무기체계 운용성 및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로 작용해 왔습니다.
- 이에, 최저가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평가구조를 전환하여 업체 적정이윤 보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유인을 위해 후속합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현행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후속합 건조사업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방위사업관리규정·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후속합정 업체선정 방식 개선

- 추진배경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및 기술개발 유인 필요
- 주요내용 후속합정 업체선정 방식 개선
 - (현행)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20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업체를 우대합니다.

- 방위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국산화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의 경우 아직도 외국산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 이에, 국산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 참여 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을 제안하는 업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내용에 반영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방위산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20

입찰참여 기회보장을 위해 사업설명회 최소 7일전에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 방위산업의 경우 통상 사업설명회 참석 업체에 한하여 제안요청서를 배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공고일부터 사업설명회까지 기간이 짧은 경우 업체 입찰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업체 입찰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사업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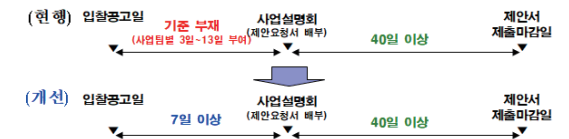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

- 추진배경 국산품 사용에 대한 제안서 평가내용 반영을 통해 사업 참여 업체의 국산품 사용 활성화 유인
- 주요내용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제안서 평가 내용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제안 업체에 대한 평가 반영
- 상용 하드웨어의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국산제품 도입방안 등을 평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방위산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

- 추진배경 입찰공고일부터 사업설명회까지 기간이 짧은 경우 입찰참여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업체 입찰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 개선 추진
- 주요내용 사업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입찰공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 02-2079-6954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이 시행됩니다.

-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에 대해 통계전문기관(한국방위산업진흥회)을 통해 통일된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변동률 적용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의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 → 7개)하되,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기본보상 이윤을 상향(조정계수 0.38 → 0.65)하고,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위해 관련 이윤율 한도를 상향(3% → 6%) 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 시행

- **추진배경**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 시행 내용임
- **주요내용**
 -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한 노임단가 및 변동률 산정방식 변경
 -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 및 실질적 수출확대 등을 위한 이윤산정 방식 변경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6개월 이상 → 3개월 이내)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27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합니다.

- 이 경우, 수출허가 행정 소요일이 90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 개발된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방산업체가 수출협상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25일 이후 수출허가 요청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KTV국민방송>정책다큐K 숨은일꾼을 찾아서 4회>슬기로운 병영생활, 청년 DREAM 국군드림업개선/방산기술 수출허가제도 개선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제도 신속·효율화 추진

- **추진배경** 기존 기술보호 관점의 수출허가 제도를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방산수출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방산업체가 수출협상 등을 위하여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현지 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출 시,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
- **시행일** 2022년 8월 25일

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6

해외 현지 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 수출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방산물자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방산업체는 시험평가 중인 방산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 재반입하고 재수출 허가 받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이후 적용됩니다.

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 **추진배경** 방산물자 활성화에 따라, 해외 현지 시험평가 건수가 증대되고 현지 사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시험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
- **주요내용**
 - (원칙)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 1년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수출 상대국의 폭동, 화재, 전쟁, 항구폐쇄 등 수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수출 상대국 정부의 사정으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된 경우
 - 기한(1년)내 수출목적(시험평가 등)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시행일** 2023년 2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1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263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시행일 : 2022년 12월 13일

Before

그동안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었습니다.



After

이제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던 경우

2 법무부·법제처

자세한 내용은 p.264, 273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민사·행정)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Before

기존에는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After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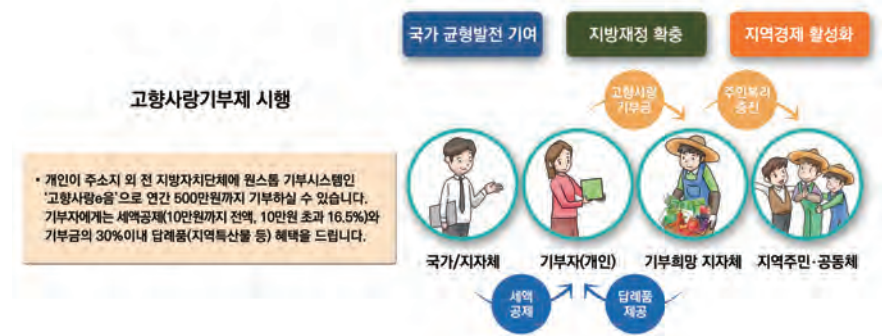


3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269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4 인사혁신처

자세한 내용은 p.272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https://whatsnew.moef.go.kr

5 해양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289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

시행일 : 2023년 6월 11일

Before

기존에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종면허증 대어·알선 금지, 보험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 無



지도·감독 근거,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 無

After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이 전면시행됩니다.



대어·알선행위를 금지

보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규정

미성년자 빗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00-3164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라도 ①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 법 시행 당시 성년자 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미성년자 빗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빗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추진배경 미성년자가 부모의 빗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 지속 발생
- 주요내용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 시행일 2022년 12월 13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합니다.(’22.12.8., 「민법」개정)

-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추진배경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해소
- 주요내용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함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 (☎ 02-2110-3886)

2023년 상반기부터 수형자 전화통화 허용횟수가 개방처우급(S1) 월 25회 이내, 완화경비 처우급(S2) 월 20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S3) 월 10회 이내, 중경비처우급(S4) 월 5회 이내로 확대되며 사형확정자는 월 10회 이내로 확대 됩니다.

- ※ 이후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확대 예정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접견 제한 등에 따른 민원인과 수용자 간 접견교통권 제약을 완화하였습니다.
※ (연간 접견 건수) '19년 3,158,924건 → '20년 1,954,599건 → '21년 1,395,199건
- 수용자 안부, 가족 생계, 재판 진행, 사회복귀 등 일상문제에 대한 상의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3년 상반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 추진배경 민원인의 접견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 및 가족과의 유대 강화 방안
- 주요내용 수형자 경비처우등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 확대

구분	수형자			
	S1	S2	S3	S4
허용횟수	월 25회	월 20회	월 10회	월 5회

- 운동장, 작업장 등 생활공간에 전화기 확대 설치(270여대 → 3,000여대)
- 사전 승인된 수신자와 휴게시간, 운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통화 실시
- 수용자 전화 운영의 디지털화'로 사용 편리성 제고
* 교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로그인 방식 : 통화횟수, 수신자, 사용금액 충전 제어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법무부 이민정보과 ☎ 02-2110-4092

2023년 4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존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편리성과 디자인이 한층 개선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2022.12.29.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공포

■ 육안식별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진 색상 변경(흑백 → 컬러) 및 사진크기 확대(35%),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발급정보 정렬 및 사진 위치 변경(좌 → 우),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정보를 QR코드로 판독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추가 등 외국인 등록증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는 최신화된 인쇄기술*적용에 따른 보안 요소를 저해하지 않고도 그간의 개선 의견(본인 식별 곤란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민간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외국인 등록증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레이저조각^{흑백} (흰색 외국인등록증 원판을 레이저로 태워 명암으로만 사진을 형상화 시키는 인쇄 기술로 워변조 불가능)+재전사 방식^{컬러}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 추진배경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민간에서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 주요내용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 시행일 2023년 4월 1일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법무부 국적과 ☎ 02-2110-4131

과학·기술 분야 외국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 보다 빠르고 쉬워집니다.

■ 4개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이공계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발굴·확보하여, 신속(6년 → 3년)·간이(5단계 → 3단계) 영주·귀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국적·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 우수 과학·기술인재를 확보하여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필요
- 주요내용
 - (개요)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영주·국적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 (대상) 과학기술원(4개)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소속 석·박사취득자 등*
 - * 5개 이공계 특성화기관 소속 외국인 학생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장학생(항공권, 학비, 숙박, 생활비 등)
 - (추진체계) '유입 촉진' → '영주·국적 연계' → '정주·정착 지원'으로 단계별·체계적 운영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법무부 국적과 (☎ 02-2110-4123)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국적이탈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그동안 병역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예외 없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제한하였으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근거가 계속하여 외국에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 예정

국적이탈 특례 제도

- **추진배경**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필요
 - *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18세 되는 해의 3월내로 한정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
- **주요내용**
 - (대상)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절차)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 요건 등 심사 →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허가 가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시행일** 2022년 12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044-205-3507)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21.10.19.) 및 시행령(22.9.13.) 제정, '23.1.1. 시행]

-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물 등) 혜택을 드립니다.
 - * 주소가 수원시인 국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30%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추진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개인(법인 불가)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와 답례품 혜택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5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사진 1장을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이용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추진배경 거주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의 불편 해소
- 주요내용
 -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
-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044-205-3522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본격 시행합니다.

- 국가·지자체*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관할하는 시도
-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 유치원 및 학교 통합·운영 허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등 특례 부여 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이 향후 다양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추진배경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22.6.10. 공포)
- 주요내용
 - (기본·시행계획)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관할하는 시·도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특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 부여
 -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44-201-8215)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집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23.1.1. 시행)

- 현재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음에도 동 시험의 성적을 5년 내 기준등급(2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중복응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습니다.
- 이에,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 단,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새소식>언론보도자료>“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22.11.8.)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추진배경 한국사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감안, 중복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정기간 조정 필요
-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 주관) 인정기간(現 5년) 폐지
-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기준등급(2급) 이상의 성적을 인정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행정)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044-200-6736)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합니다.(’22.12.8., 「민법」개정)

-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향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추진배경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 해소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함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044-200-6741)

2023년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시행됩니다.(‘21.3.23. 제정 「행정기본법」 2단계 시행)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023년 3월 24일 이후에 한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023년 3월 24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취소, 폐쇄명령,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처분의 재심사)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 추진배경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 권리구제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영업정지, 취소 등 6종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 (처분의 재심사)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가능
-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재고운영 개선을 통한 비축물자 상시방출 확대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 042-724-7032)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수급불안 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기존에는 전쟁, 대규모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안전재고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운영재고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긴급 상황 외에는 안전재고 방출을 제한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긴급 상황 도래 전인 수급 불안 시에도 안전재고의 일부 물량을 활용하여 상시방출을 지속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운영방식 개선

- 추진배경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중소기업 방출 수요도 급증하므로 운영재고량 범위 내에서만 방출하는데 한계
- 주요내용 긴급단계 도래 전인 수급불안 단계에서도 안전재고의 일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방출 수요에 대응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조달청 혁신조달과 (☎ 042-724-7203)

2023년 상반기부터 지정된 혁신시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규격의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 혁신시제품 지정 기업은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제품,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 개선품 등의 규격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규격 추가 제품은 이전 지정된 혁신시제품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 042-724-7503)

불공정조달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일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언론매체 등 공개 건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12개월간 4회 이내로 제한하는 포상금 지급횟수 상한을 폐지하여 신고건수에 따라 포상금을 합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 추진배경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를 제고 및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유도
- 주요내용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된 혁신시제품에 규격추가를 허용
 1.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3. 혁신시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4.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인 경우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 언론매체 공개 건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신고자의 신고포상금을 누적건수(12개월간 4회)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 삭제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2)

수리·점검 용역과 임대차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담보를 위한 적격심사 평가기준이 신설됩니다.

- 수리·점검 용역은 기술축적과 인력 등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지므로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임대차 용역은 해당 물품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임대물품의 A/S 처리능력을 평가요소에 도입합니다.
- 아울러, 수요기관이 평가항목, 배점 등을 용역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도 마련됩니다.
- 신설 기준은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법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02-3150-3433)

지속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 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 하겠습니다.
 - * 계좌 지급정지,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범죄 피해금 환급, 피해자 명의도용 구제 등
-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3개 분야 신설

- 추진배경 계약이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용역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신설
- 주요내용
 - 계약요청이 빈번한 ①수리·점검 용역, ②임대차 용역 심사기준 신설
 -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③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 마련
- 시행일 2023년 상반기 中

참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보도자료>“보이스피싱 근절방안 관련 보도자료”

법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 추진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기능·역할에 따라 부처별 신고창구가 분산되어 있고, 조직적 범죄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센터 부재
- 주요내용
 - [센터 1단계] 전화·인터넷 신고 통합 및 원스톱 민원처리
 - [센터 2단계] 통합플랫폼 신설하여 정보를 실시간 축적, 통합 분석 및 공유
- 시행일 [센터 1단계] '23년 7월, [센터 2단계] '24년 限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벌칙금 부과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1)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의 벌칙금(6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2호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벌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벌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한 것입니다.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 추진배경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벌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 주요내용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금·벌점 부과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벌칙금 부과

- 추진배경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벌칙금 부과 가능함에도, 자전거 등 운전자에 대한 벌칙금액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
- 주요내용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벌칙금 규정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2753)

차량 신호등이 ①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②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 또한,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신호등 적색 등화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 추진배경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의 의미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
- 시행일 2023년 1월 22일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소방청 생활안전과 (☎ 044-205-7665)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법적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 법률이 시행되면 소방관서장이 장애인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며,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 법적 의무화로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제작 등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마련됩니다.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 추진배경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 및 대처능력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주요내용
 -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 추가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 입법결과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안전교육·훈련)제2항 개정
-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는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 추진배경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대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

• 주요내용 • (원칙)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겸직금지 세부대상>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선임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제외)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특급, 1급·2급·3급 중 1개 자격증+강습교육 수료증

-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①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인 것 또는 ②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또는 ③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추진배경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어 화재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원칙)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적용 대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각(①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하는 것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상의 근무자 등에게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제도가 강화됩니다.

-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평가도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교육대상부터 적용됩니다.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 **추진배경**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대상물에 대한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
- **주요내용**
 - (대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평가)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 결과서를 관계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22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추가됩니다.

- 기존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를 추가해야 합니다.
 - ※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또한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 ※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 **추진배경** 공사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제도 개정
- **주요내용** (종류) 7가지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
 -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 1) 연면적 3천㎡ 이상
 -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 1) 연면적 400㎡ 이상
 -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현장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 기준 강화)
2023년 7월 1일(임시소방시설 추가)

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 ☎ 044-205-7522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창고시설은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며, 터널은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이 새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성능위주설계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 추진배경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이러한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대상 추가
- 주요내용 (성능위주설계대상)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551

2023년 6월 11일부터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22.6.10. 공포)

-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을 「수상레저기구등록법」으로 분리·제정하였고, 조종면허·안전관리·사업 등 잔여조문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 시행

- 추진배경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
- 주요내용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경청장의 지도·감독, 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 운영
-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044-200-4843)

2022년 12월 27일부터 동일인 친족범위가 조정되는 등 대기업집단제도가 합리화됩니다.
(*22.12.27.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되고, 동일인이 민법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친족에 포함됩니다.
 - * 단, 혈족 5~6촌·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
 - ※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10,026명 → 5,059명, '22.5월 기준)
- 한편,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매출 대비 R&D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 추진배경 대기업집단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추진
- 주요내용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혈족 4촌, 인척 3촌 (예외 있음),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 포함)
 -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
 - 중소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R&D 비중 5% 이상 → 3% 이상)
-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44-200-4366)

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PEF에 대한 출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임원겸임 등에 있어서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가 쉬워지고(간이신고 확대), 심사도 빨라집니다(간이심사 확대).

- 간이신고·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은 온라인(mna.ftc.go.kr)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15일내 신속히 승인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30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한 기업결합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 추진배경 기업결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하여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고자 추진
 - * 공정위 심사건수 '18년 701건→'19년 766건→'20년 865건→'21년 1,113건
- 주요내용
 - (간이심사 확대) 사실관계만을 확인하고 15일 내에 승인하는 유형 확대
 - 가. 임대·개발 등 투자수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 나. PEF에 대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하는 경우
 - 다. 벤처·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의 경우
 - 라. 그 외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근거 마련
 - (간이신고 확대) 신고서 기재·첨부사항 간소화 및 온라인 신고 이용 대상 확대
 - 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나. PEF에 대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하는 경우
 - 다. 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의 경우
 - 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업결합을 정식신고하는 경우
-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5)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22.1.11.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공시사항은 지급수단(현금, 어음 등)·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이며, 공시의무 회사는 매년 반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위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을 하려는 수급사업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결제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 추진배경**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지급수단, 지급기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 *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 **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내, 15일 초과 30일 이내 등
 - 매년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92)
가맹거래과 (☎ 044-200-4936)
유통거래과 (☎ 044-200-4949)
대리점거래과 (☎ 044-200-4960)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됩니다.

- 구체적 감경 비율은 자진 시정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결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28일(가맹·유통·대리점), 2023년 1월 12일(하도급)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행정예고”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 추진배경** 법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
- 주요내용**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 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최대 50%로 상향
 - 구체적인 감경 비율은 자진 시정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결정
- 시행일** 2022년 12월 28일(가맹·유통·대리점)
2023년 1월 12일(하도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044-200-4466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담이 완화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22.8.3. 개정)

- ①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②리퍼브 가구의 하자정보를 제공하고, ③설치형 가전 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④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판매자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 추진배경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보장과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
- 주요내용
 -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
 -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 제공
 -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044-200-4432

2023년 2월 3일부터 제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22.2.3.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용역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방식
-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사업자는 '23년 2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선수금 보전조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상향(최대 50%)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 추진배경 일부 상조업체가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 미적용
- 주요내용
 -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
 - 해당 상품 판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외부 회계감사, 선수금 보전 조치 의무화
- 시행일 2023년 2월 3일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9

행정심판 청구인이 보다 편리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대폭 개선합니다.

-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인은 사건 개요·경위·처분의 위법성 등을 포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했는데,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청구서 작성이 어려웠으며 이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 이에 간단한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무엇을 주장하고(청구인 주장), 무엇을 준비해야(증빙자료) 하는지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지(Easy)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스스로 사건 개요·경위·처분의 위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곤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를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지원
 - (문서변환) 행정심판 청구서 속성별로 재결서에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기계판독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연관분석) 과거 사건의 연관분석을 통해 청구인 상황과 유사한 청구서 작성 정보들을 제공
 - (청구서 자동완성) 데이터바구니 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에 맞게 자동완성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76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항공승무원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2.6.10. 개정, '23.6.11. 시행)

- 기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승무원 안전관리 체계가 원자력안전 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수립, (국토교통부)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
- 아울러,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과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22.6.10 개정, '23.6.11 시행) 및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규정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기관을 원자력안전 위원회로 일원화
 -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정기검사 근거 마련
-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2100-3052)

2023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글·사진·영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권 행사를 지원합니다.
-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포털(privacy.go.kr)'에 접속하여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URL)과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게시물 삭제가 어렵거나, 범죄 수사,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 시행

- **추진배경** 디지털 네이티브인 현대의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되나, 이에 대해 삭제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대상) 만 24세 이하의 자
 - (요건) ①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본인이 온라인 상에 게시한 게시물로서 ②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③자기게시물임을 입증되는 게시물
 - (내용)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블라인드 요청, 검색목록 배제 지원 등
 - (절차)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포털(privacy.go.kr)에 삭제희망 게시물 링크를 접수하면,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시행일** 2023년 4월 중

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02-2100-3076)

그간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되었던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에도 허용합니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월)

※ 자체결합이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제공하는 결합

- 가명정보 자체결합 제한으로 민간 결합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고 타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결합으로 인해 시간·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체결합(제3자 제공 목적) 허용범위를 공공에서 민간 결합전문기관까지 확대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 **추진배경**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자체결합을 민간에도 확대하여 공공·민간 모든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총 22개): 공공 12개, 민간 10개 기관
- **주요내용**
 -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 허용 확대(공공 → 공공·민간)
 - 취미·건강·여가 등을 통해 기록되는 정보(Life-Log), 개인 소비패턴 등 민간의 유용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여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이 증가되고 데이터 기업성장 촉진을 예상
- **시행일** 2023년 1월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 02-2100-3085)

국내 대학(원)의 개인정보보호 전공 및 학과가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인재 양성사업' 대상을 5개 대학으로 확대합니다.

- '22년에 선정되어 교과과정 개발을 완료한 서울여대(1개교)는 '23년 정보보호학과 내 부전공 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 전공을 개설·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23년에는 신규로 4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전공 개설 및 관련 교과개발·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 대학에서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가 양성 보도자료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 **사업기간** '22.3월~'25.2월(3년) / (총 사업비) 약 13억원('22년 3.48억원)
※ '22년 예산은 사업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8개월 기준, '23년 이후 1년 기준 5억원 지원 예정
- **지원대상**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 및 교과개발·운영이 가능한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4년제) 153개교 중 1개교
- **주요내용** 선정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제반비용 지원
- **수행체계** **교육부** 사업 공동업무 담당
개인정보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 운영
※ **KISA** 사업부처의 관리하에 사업 관리·운영 및 지원 대학 선정 등 위탁수행
- **추진경과** (대학선정) 서울여대 선정(7.11.~12.) → (사업착수) 협약 체결 및 교과과정 개발 착수(8.8.-)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요건 완화 • 2억원 →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 시 50% 지급 ■ 지급액 인상 ■ 지급액 인상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계개편안</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p>
연금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납입액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 ■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종합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추가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p>소득세법 ('23.1.1.)</p>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계개편안</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근속연수</th> <th>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하</td> <td>30만원×근속연수</td> </tr> <tr> <td>6~10년</td> <td>150만원+ 50만원×(근속연수-5년)</td> </tr> <tr> <td>11~20년</td> <td>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td> </tr> <tr> <td>20년 초과</td> <td>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td> </tr> </tbody> </table>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5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금액 상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근속연수</th> <th>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하</td> <td>100만원×근속연수</td> </tr> <tr> <td>6~10년</td> <td>500만원+ 200만원×(근속연수-5년)</td> </tr> <tr> <td>11~20년</td> <td>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td> </tr> <tr> <td>20년 초과</td> <td>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td> </tr> </tbody> </table>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p>소득세법 ('23.1.1.)</p>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5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계개편안</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p>																					
해외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세액공제 방식 • 자회사 지분율 25%, 해외자원개발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회사 배당소득 면제 • 익금불산입 방식 • 자회사 지분율 10%, 해외자원개발은 5% 	<p>법인세법 ('23.1.1.)</p>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계개편안</p>		<p>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p>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p>< 신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대상채권) 국채, 통안채 •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통안채를 양도하는 경우 •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p>소득세법 ('23.1.1.)</p> <p>법인세법 ('23.1.1.)</p>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계개편안</p>		<p>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2)</p>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감몰아주기 증여제이익 과세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50%, (중견) 40%, (일반) 30% - 증여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A) × (주식보유비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중소)50, (중견)20, (일반)5 * B(%): (중소)10, (중견)5, (일반)0 ■ <단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좌 동) ■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 시 사업부문별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제이익 계산 가능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22.7월)</p>	<p>상속세 및 증여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기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공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업영위기간</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20년 미만</td> <td>200억원</td> </tr> <tr> <td>20년 이상-30년 미만</td> <td>300억원</td> </tr> <tr> <td>30년 이상</td> <td>500억원</td> </tr> </tbody> </table> ■ 피상속인 지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 (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중견기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공제한도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업영위기간</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20년 미만</td> <td>300억원</td> </tr> <tr> <td>20년 이상-30년 미만</td> <td>400억원</td> </tr> <tr> <td>30년 이상</td> <td>600억원</td> </tr> </tbody> </table>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2주택 이하</th> <th>3주택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3억원 이하</td> <td>0.6%</td> <td>1.2%</td> </tr> <tr> <td>3억원 초과 6억원 이하</td> <td>0.8%</td> <td>1.6%</td> </tr> <tr> <td>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td> <td>1.2%</td> <td>2.2%</td> </tr> <tr> <td>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 <td>1.6%</td> <td>3.6%</td> </tr> <tr> <td>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td> <td>2.2%</td> <td>5.0%</td> </tr> <tr> <td>94억원 초과</td> <td>3.0%</td> <td>6.0%</td> </tr> <tr> <td>법인</td> <td>3.0%</td> <td>6.0%</td> </tr> </tbody> </table> ■ 세부담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 (2주택 이하) 150% •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법인) 상한 없음 ■ 기본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법인) 기본공제 없음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인	3.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 초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2주택 이하*</th> <th>3주택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3억원 이하</td> <td></td> <td>0.5%</td> </tr> <tr> <td>3억원 초과 6억원 이하</td> <td></td> <td>0.7%</td> </tr> <tr> <td>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td> <td></td> <td>1.0%</td> </tr> <tr> <td>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td> <td>1.3%</td> <td>2.0%</td> </tr> <tr> <td>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 <td>1.5%</td> <td>3.0%</td> </tr> <tr> <td>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td> <td>1.5%</td> <td>4.0%</td> </tr> <tr> <td>94억원 초과</td> <td>2.0%</td> <td>5.0%</td> </tr> <tr> <td>법인</td> <td>2.7%</td> <td>5.0%</td> </tr> </tbody> </table> ■ 세부담 상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 • 150% • (좌 동) ■ 기본공제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억원 → 9억원 • 11억원 → 12억원 • (좌 동)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p>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4.0%	94억원 초과	2.0%	5.0%	법인	2.7%	5.0%	<p>종합 부동산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p>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인	3.0%	6.0%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4.0%																																																					
94억원 초과	2.0%	5.0%																																																					
법인	2.7%	5.0%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 ■ 특허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 ※ 단, 중소·중견 면세점은 2회까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 이내까지 허용 ■ 특허 갱신 횟수를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2회 까지 허용 ※ 단, 갱신 특허기간은 회당 5년 이내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법개정안 ('22.7월)</p>	<p>관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p>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 20만원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	<p>소득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 (%)</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 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 ~ 4,600만 원</td> <td>15</td> </tr> <tr> <td>4,600 ~ 8,800만 원</td> <td>24</td> </tr> <tr> <td>8,800 ~ 1억 5천만 원</td> <td>35</td> </tr> <tr> <td>1.5 ~ 3억 원</td> <td>38</td> </tr> <tr> <td>3 ~ 5억 원</td> <td>40</td> </tr> <tr> <td>5억 원 초과</td> <td>42</td> </tr> <tr> <td>10억 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10억 원 초과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과세표준 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 (%)</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 원 이하</td> <td>6</td> </tr> <tr> <td>1,400 ~ 5,000만 원</td> <td>15</td> </tr> <tr> <td>5,000 ~ 8,800만 원</td> <td>24</td> </tr> <tr> <td>8,800 ~ 1억 5천만 원</td> <td>35</td> </tr> <tr> <td>1.5 ~ 3억 원</td> <td>38</td> </tr> <tr> <td>3 ~ 5억 원</td> <td>40</td> </tr> <tr> <td>5 ~ 10억 원</td> <td>42</td> </tr> <tr> <td>10억 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	1,400만 원 이하	6	1,400 ~ 5,000만 원	15	5,0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p>소득세법 ('23.1.1.)</p>
	과세표준	세율 (%)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																																						
1,400만 원 이하	6																																						
1,400 ~ 5,000만 원	15																																						
5,0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축소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20만원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소득공제율) 40% • (공제 한도)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월세액의 1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400만원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법개정안 및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p>	<p>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3.1.1)</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p>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도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대학·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	<p>소득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 공제한도) 항목별 100만원 • (적용기한) '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중교통('22년 하반기)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공제한도) 공제한도 단순화 • (추가 공제한도) 통합한도로 전환 • (적용기한) '25.12.31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p>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 (임대인)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 (적용기간) '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기간) '23.12.31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소득세법 ('23.7.1.)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5년간 50%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 적용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50%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10년간 50% • '25.12.31. 	조세특례제한법 ('23.1.1.)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법개정안 및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 〈신 설〉 •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좌 동)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23.1.1.)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소득세법 ('23.1.1.)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일반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중소기업,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한도 확대 • 60% → 80% • (좌 동) 	법인세법 ('23.1.1.)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대상 기부금의 종류 • ① 법§24②에 따른 기부금 (명칭 없음, 舊 법정기부금): 50% 한도 손금산입 • ② 법§24③에 따른 기부금 (명칭 없음, 舊 자정기부금): 10% 한도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한도 확대 • ① "특례 기부금" • ② "일반 기부금" 	법인세법 ('23.1.1.)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3)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 등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좌동) 30만원 → 50만원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	<p>법인세법 ('23.1.1.)</p> <hr/> <p>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p>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기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특례) 증여세 과세기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기간) 7년 - (가업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7년간 유지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적용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50%(상장법인 30%) 이상 → 40%(상장법인 20%) 이상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5년→3년 - 대표이사직 유지: 7년→5년 (좌동) (좌동)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보도자료</p>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hr/> <p>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기업주식을 양도·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세 납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⑥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 ②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④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p>	<p>조세특례 제한법 ('23.1.1.)</p> <hr/> <p>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요건) ① & ② &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 (요건) ① & ② &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경비 계산특례 적용 받은 경우 -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5년 → 10년 - ② 5년 → 10년 	<p>소득세법 (*2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삭 제> 	<p>인지세법 (*2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 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문서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법 기본통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 (예외) 현금으로 후납*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제창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삭 제> 	<p>인지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p>부가가치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 §42② 부당한 방법)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p>부가가치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삭 제> 	<p>인지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p>부가가치세법 (*23.1.1.)</p>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 §42② 부당한 방법)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p>부가가치세법 (*23.1.1.)</p>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 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문서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법 기본통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 (예외) 현금으로 후납*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제창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삭 제> 	<p>인지세법 (*23.1.1.)</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 (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감면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 100만원 - 전기차: 300만원 - 수소전기차: 400만원 • (기한) '22.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24.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22.7월)</p>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p>
다자녀가구 승용차개별소비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세 면세 승용차 범위 • 장애인 구입 차량 • 환자수송 전용차량 •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 대상 확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300만원 한도)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22.7월)</p>	<p>개별소비세법 ('23.1.1.)</p>
			<p>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p>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 등의 청구 • 일반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청구 가능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좌동) •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p>	<p>국세기본법 ('23.1.1.)</p>
			<p>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109조) •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 • (열람절차) ① 임대차계약 전에, ②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③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 (좌 동) • (좌 동) • ①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③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p>	<p>국세징수법 ('23.4.1.)</p>
			<p>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p>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 • (원칙)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 (당해세 우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 (좌 동) • (좌 동) •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p>	<p>국세기본법 ('23.4.1.)</p>
			<p>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p>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기업 20%, 중견 10%, 대 5% • (적용기한) '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및 대기업 적용배제 • (좌 동) • (좌 동) •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 '25.12.31.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p>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p>	<p>■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제조업 등 48개 • (감면율) 5~3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본점 소재지</th> <th rowspan="2">업종</th> <th colspan="2">감면율(%)</th> </tr> <tr> <th>소기업</th> <th>중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도권</td> <td>도(소)매업, 의료업</td> <td>10</td> <td>-</td> </tr> <tr> <td>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td> <td>20</td> <td>-</td> </tr> <tr> <td rowspan="2">지방</td> <td>도(소)매업, 의료업</td> <td>10</td> <td>5</td> </tr> <tr> <td>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td> <td>30</td> <td>15</td> </tr> </tbody> </table> <p>*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2.12.31. 	본점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지방	도(소)매업, 의료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p>■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p>* 특례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12.31.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p>
	본점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지방	도(소)매업, 의료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p>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p>	<p>■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2.12.31.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12.31.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p>	<p>■ 청년 연령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범위: 15 ~ 29세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조항(영)</th> </tr> </thead> <tbody> <tr> <td>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td> <td>§11의2⑤</td> </tr> <tr> <td>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td> <td>§61⑥</td> </tr> <tr> <td>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td> <td>§99의8⑤</td> </tr> <tr> <td>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td> <td>§116의14④</td> </tr> <tr> <td>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td> <td>§116의15②</td> </tr> <tr> <td>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td> <td>§116의21⑥</td> </tr> <tr> <td>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td> <td>§116의25⑤</td> </tr> <tr> <td>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td> <td>§116의26⑥</td> </tr> <tr> <td>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td> <td>§116의27⑥</td> </tr> </tbody> </table>	내용	조항(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11의2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61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99의8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14④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116의15②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	§116의21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16의25⑤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116의26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27⑥	<p>■ 청년 연령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 29세 → 15 ~ 34세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p>
	내용	조항(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11의2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61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99의8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14④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116의15②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	§116의21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16의25⑤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116의26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의27⑥																						
<p>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p>	<p>■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중소기업 공장의 경우 2년) 이상 가동 후 이전한 공장·법인 •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방 광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로 이전 시: 5년 100% + 2년 50% ②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이전 시: 7년 100% + 3년 50% <p><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2.12.31. 	<p>■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① ③외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 등(④지역)으로 이전 시: 7년 100% + 3년 50% ③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10년 100% + 2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 	<p>조세특례제한법 ('23.1.1.)</p>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p>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대상)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적용기한) '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대상)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OTT 콘텐츠 제작비 • (좌 등) • (적용기한) '25.12.31. 	조세특례제한법 ('23.1.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 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 • (경감액) 산출세액의 30% • (한도) 1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경감 한도 인상 • (현행과 같음) • (한도) 20만원 	관세법 ('23.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연장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23.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7)

관세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품의 적재 신청 등(5조) • <신 설> ■ 용품의 하기 신청 등(6조)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품의 적재 신청 등(5조) • 공급자 등은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하여 외국으로 출항하는 국내운항기에 대해 사전에 국내운항 출발 공항에서 적재허가 신청 가능 ■ 용품의 하기 신청 등(6조) • 공급자 등은 외국에서 입항한 후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하여 국내구간을 운항할 예정인 국제무역기에 대하여 하기 장소를 용품의 재고관리를 하는 국제항의 보세구역으로 하여 하기허가 신청 가능 	'23년 초 시행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 내 LTV 한도 주택가격 별 지역별 20-50% 상이 ■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부담금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내 LTV 최대한도 50%로 상향 단일화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함께 확대(LTV 최대 70% 허용, 대출한도 4억→6억) ■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부담금 허용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22.12.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5)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을 제외한 전자적 방식(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동의를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허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12.8.)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524)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보험의 경우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미적용 ※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既 적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12.8.)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524)
청년도약계좌 출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 	('23.6., 잠정)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이 마련시행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신설 ('22.12.30.)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시 정보제공 범위가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492개의 기본 항목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720개 항목으로 확대 	신용정보법 ('20.2.4.)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269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 지급보증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방식·범위 • 회생절차 신청 기업 • 회생절차 종결 기업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방식·범위 • 회생절차 신청 기업 • 회생절차 종결 기업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기촉법상 부실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기업 추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2)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 등에 CTR 제공시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 통보 • (통보방법) 등기우편 • (통보절차) FIU → 등기우편 → 영의인 • (도달시간) 최소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 추가 • (통보방법) 국민비서(추가), 등기우편 • (통보절차) FIU → 전자문서(카톡, 토스 등) → 영의인 ※ 전자문서 미확인시 등기우편 발송 • (도달시간) 발송 즉시 	특정금융정보법 §10의2 ('13.11.1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21)

교육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생 진단 및 선정, 지원에 대한 단위학교 및 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진단,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 절차 마련 • 학습, 심리·정서 등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단위학교에 제공 • 교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대상학생 선정 및 맞춤형 지원 제공 •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경계선 지능 등 학생별 상황 특성에 따라 집중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시도별 지원 확대 	<p>기초학력 보장법 (*23.1.1.)</p>
			<p>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044-203-6522)</p>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수 과목, 신산업 기술 분야 과목은 교사 미배치 및 학교 여건으로 인해 미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도 온라인학교 신설 운영을 통해 학생이 수강 가능 <p>☞ (참고) 교육부 누리집) 보도자료) 고교 단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p>	<p>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044-203-6280)</p>
			<p>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044-203-6280)</p>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가능 및 급여 환수 대상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및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소득자료 확인 규정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가능 및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소득자료 확인 규정 마련 •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서 퇴직유족 급여 제한 여부 심사 •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 요청 권한 부여 	<p>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3.1.19.)</p>
			<p>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179)</p>

교육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휴직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직계존비속의 간호를 위해서만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휴직 사유 확대하여 직계존비속의 부양·돌봄을 위해 휴직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가능 <p>☞ (참고) 교육부 누리집)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p>	<p>교육공무원법 (*23.4.19.)</p>
			<p>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70)</p>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지정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 규정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규정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p>☞ (참고) 교육부 누리집)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p>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3.4.19.)</p>
			<p>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 (044-203-6312)</p>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학부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청 • 확보된 예방접종 정보를 교육행정시스템에 입력 • 미접종 학생 접종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과 교육행정시스템을 연계 • 학생 개인의 예방접종 이력을 교육행정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 • 미접종 학생 접종 독려 	<p>학교보건법 (*23.3.2.)</p>
			<p>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p> <p>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7)</p>

교육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교육급여의 급여형태 개편(계좌이체→카드 포인트 등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의 급여형태 • (원칙)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자 보유 계좌로 이체 • (예외) 전장·재난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의 급여형태가 카드 포인트 등 바우처 개편 • (원칙) 수급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카드 포인트로 지급 • (예외) 다음의 경우는 선불카드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자 <p>☞ (참고) 교육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3년 교육부 예산안 보도자료</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23.3.1.)</p>
			<p>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p>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특수학교뿐 아니라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p>☞ (참고) 교육부 누리집) 보도자료 2023년 교육부 예산안 보도자료</p>	<p>초·중등교육법 (*23.4.19.)</p>
			<p>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044-203-7081)</p>
원격대학의 자율성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불가 • 특수대학원만 설치 가능 ■ 사이버대학(2년제)에 전공심화 과정 설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함)대학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이버대학(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 허용 	<p>고등교육법 (*23.4.19.)</p>
			<p>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421)</p>

교육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은행제 학습자(만 55세 이하, 직전학기 C학점 이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 인정학습과정'을 수강(예정) 중인 학습자 ■ 대출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천만 원 한도) ■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월 초 별도 고시 예정 <p>☞ (참고) 교육부 누리집) 보도자료) 고금리 시대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대출 가능해진다.</p>	<p>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2.12.29.)</p>
			<p>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1)</p>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과 관련 연구만 가능 ■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과와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립대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국립대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3.3.28.)</p>
			<p>교육부 국립대병원지원팀 (044-203-6020)</p>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3.1.)
		환경부 환경교육팀 (044-201-6535)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 연 840시간(1일 3.5시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7만5천여 가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 연 960시간 (1일 4시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8만5천여 가구 지원 	아이돌봄지원법 (‘23.1.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53-58% 이하 한부모 대상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23.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 사전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 전 아동양육비 지급 후, 추후 보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23.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항목 및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항목 및 배점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통합)	1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지표 통합 후 삭제)	-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가점지표로 이동 후 삭제)	-
				유연근무제 활용률 (사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유연근무제 활용률 (사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신설)	-	연차사용률	5
				(신설)	-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신설)	-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운영	5
				정시퇴근(‘가족사랑의날’, ‘PC-OFF’ 등 시행)	5	(가점지표로 이동 후 삭제)	-
				(신설)	-	가족여가활동지원	5
				(신설)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3)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시행 기간 6개월('22년 7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시행 기간 확대('23년 1월 ~ 12월) 	('23.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형성 사업 • 자기개발, 심리정서 상담, 자조모임 등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형성 사업 • 자기개발, 심리정서 상담, 자조모임 등 네트워킹 • (신규) 병원동행 및 단기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23.1.1.)
청소년 국제교류 다양화 및 직접 교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 국가간 청소년 교류 : 아세안 국가 위주 교류 • 국제 청소년 서밋 : 온라인 서밋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국제교류 다양화 및 직접 교류 추진 • 국가간 청소년 교류 : 유럽 중남미 교류국 확대 • 국제 청소년 서밋 : 유럽·아메리카 국가 등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초청 사업으로 전환 	('23.1.1.)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만9~24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연 144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만9~24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연 156천원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23.1.1.)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지급액 • 월 30만원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요건 • 쉼터 2년 거주, 직전 1년 연속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지급액 • 월 40만원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요건 • 쉼터 2년 거주, 직전 6개월 연속 보호 	('23.1.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액 월 55만원, 예산 2,147백만 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액 월 65만원, 예산 3,587백만 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8호 ('23.1.1.)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주거지원)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간 연계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 (7일 이내)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3개월 내외)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5)
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운영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경력단절여성 등의 기술 및 숙련수준 제고를 위한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AI·3D·바이오·빅데이터 등) 과정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공형 계절근로 본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 * '22년 비예산 사업으로 5개소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대상) 단기 농업 고용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자체(시·군) (규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농협)에서 개소당 평균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 (지원)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 개소당 65백만원 지원 	해당없음 (*23. 1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 관련 사업 공고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보건복지부) (*23.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583,444원 - 2인가구 978,026원 - 3인가구 1,258,410원 - 4인가구 1,536,324원 - 5인가구 1,807,355원 - 6인가구 2,072,101원 ■ 재산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본재산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생계급여 주거용재산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1억 2,000만원 - 중소도시 9,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 의료급여 주거용재산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1억원 - 중소도시 6,800만원 - 농어촌 3,8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623,368원 - 2인가구 1,036,846원 - 3인가구 1,330,445원 - 4인가구 1,620,289원 - 5인가구 1,899,206원 - 6인가구 2,168,394원 ■ 재산 선정기준 ● 기본재산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시·세종·창원 1억 4,600만원 - 기타 1억 1,200만원 <p>☞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보도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기초생활보장법 ('23년 상반기)</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p> <p style="text-align: center;">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간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지원 금액 (원/월) <table border="1"> <tr> <th>가구구성원수</th> <th>지원금액</th> </tr> <tr> <td>1인</td> <td>583,400</td> </tr> <tr> <td>2인</td> <td>978,000</td> </tr> <tr> <td>3인</td> <td>1,258,400</td> </tr> <tr> <td>4인</td> <td>1,536,300</td> </tr> <tr> <td>5인</td> <td>1,807,300</td> </tr> <tr> <td>6인</td> <td>2,072,100</td> </tr> <tr> <td>7인</td> <td>2,334,10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5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583,400	2인	978,000	3인	1,258,400	4인	1,536,300	5인	1,807,300	6인	2,072,100	7인	2,334,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지원 금액 (원/월) <table border="1"> <tr> <th>가구구성원수</th> <th>지원금액</th> </tr> <tr> <td>1인</td> <td>623,300</td> </tr> <tr> <td>2인</td> <td>1,036,800</td> </tr> <tr> <td>3인</td> <td>1,330,400</td> </tr> <tr> <td>4인</td> <td>1,620,200</td> </tr> <tr> <td>5인</td> <td>1,899,200</td> </tr> <tr> <td>6인</td> <td>2,168,30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선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5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2,168,300	<p style="text-align: center;">간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p>	<p style="text-align: center;">「간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3.1.1.)</p>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583,400																																	
2인	978,000																																	
3인	1,258,400																																	
4인	1,536,300																																	
5인	1,807,300																																	
6인	2,072,100																																	
7인	2,334,100																																	
가구구성원수	지원금액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2,168,300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수당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충출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p>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수당 인상</p>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포함) ('23.1월 ~)</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기반과 (044-202-3323)</p>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3.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 3. (현행과 같음) 	<p>장애인활동법 (‘23.1.1.)</p>
			<p>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p>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수당 지급액 • 매월 35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수당 지급액 • 매월 40만 원 	<p>아동복지법 (‘23.1.1.)</p>
			<p>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9)</p>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 •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지원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p>☞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보도자료</p>	<p>아동복지법 (‘23. 하반기)</p>
			<p>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43)</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모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0~1세 아동(‘22.1.1일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 지급* *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0~1세 아동(‘22.1.1일 이후 출생아)에게 부모급여 지급 •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미정</p>	<p>아동수당법</p>
			<p>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1)</p>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기준) 의료비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재산 과표 5억4천만원 이하 시 • (지원한도) 연 3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질환) 모든질환 • (지원기준) 의료비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재산 과표 7억원 이하 시 • (지원한도) 연 5천만원 	<p>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23.상반기)</p>
			<p>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1)</p>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30개소 	<p>「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제5항 (‘23.1.1.)</p>
			<p>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6, 3863)</p>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자살예방법 제20조 (‘23.1월 중)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3)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	■ 자살예방 전담인력(467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전담인력(500명, +33명) 추가 지원 	자살예방법 제13조 (‘23.1.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2)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 추진(12개 지역) 	(‘23.7)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044-202-3031)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조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조성 • 펀드 규모 : 140억원* * 정부 100억원 + 민간 40억원 	(‘23.상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활형 사회서비스 신규 모델 개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사회서비스 신규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 생활형* 사회서비스 지원: 196억원 * 정책대상 :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 16억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3.하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2)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운영 ■ 혁신 모델 확산 	(‘23. 1분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1, 044-202-3212, 044-202-3202)
주간활동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125시간 (85-165시간) • 기본형 △22, 확장형 △56시간 차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월 제공시간 44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사업 • 부모상담 지원대상 567명 • 부모교육 지원대상 13천명 • 가족휴식 지원대상 11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신규) •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 제공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154시간(132-176시간) • 기본형 차감 없음, 확장형 △22시간 차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66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사업 • 부모상담 지원대상 1천명 • 부모교육 지원대상 15천명 • 가족휴식 지원대상 14천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23.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인력: 33,2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5만명 (+5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인력: 36,524명 (+3,321명) 	<p>노인복지법 ('23.1.1.)</p> <hr/> <p>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p>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수 23.7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수 27.5만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개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관리 시스템에 진료기록 보관 및 발급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생존자는 고난도의 암치료 및 그 후유증 외에 다양한 건강문제가 있으나, 암연구는 암치료에 치중되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 암치료 합병증, 암 후유증, 만성질환,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복합적 문제 발생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 암생존자의 후유증 치료나 생활터 중심의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개발과 진료 가이드라인 미흡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와 복지사업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는 복합 중증 질환을 가진 암생존자의 헬스케어를 관리하기엔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니즈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이의 실증을 통한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암생존자 중심 연구-임상-활용 Ecosystem 구축 지원 암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지원 임상시험 체계 구축 및 헬스케어기술 임상시험(실증) 지원 	<p>암관리법 ('23~'27)</p> <hr/> <p>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7)</p>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예산: 7억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운영, 민관협력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예산: 14억 민관협력형 사업 지원 확대, 생명존중민관협의회 기능 확대 예정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R&D)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진료기술개발('23년, 56억) (내역1) 비대면진료기술개발 (7개 과제, 4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기 개발 - 비대면 진료 위증증 예측 및 응급대응 기술개발 - 비대면 진료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내역2)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1개 과제, 1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신청공고) '23. 1분기 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 미해결 치료제(바이러스, 세균 등) 도전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해결 치료제(바이러스, 세균 등) 도전기술 개발 ■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23년 37.5억)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3~'2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 ('23년, 16억원(복지부)) • (내역1)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지원 (12.4억원) • (내역2) 평가기준 개발 및 임상연구 진입지원(2.1억원) • (내역3) 사업단 운영비(1.5억원) • (신청공고) '23. 상반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 상반기)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44-202-2899)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장기연구개발('23년, 60억) • (내역1) 이종고형장기 기술개발(27억원) • (내역2) 이종 세포 및 장기의 임상 가능성 검증(28.5억원) • (내역3) 이종장기기술 인프라 구축 (4.5억원) • (신청공고) '23. 상반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 상반기)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44-202-2899)
이종장기연구개발 (R&D)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장기연구개발('23년, 60억) • (내역1) 이종고형장기 기술개발(27억원) • (내역2) 이종 세포 및 장기의 임상 가능성 검증(28.5억원) • (내역3) 이종장기기술 인프라 구축 (4.5억원) • (신청공고) '23. 상반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 상반기)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44-202-2899)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다양화) • 단기프로그램 ■ (지원수준 확대) • (인센티브)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다양화) • 단기프로그램 •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 (지원수준 확대) • 단기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50만원 •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5개월) - (인센티브) 50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 (*'23.1.1.)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직종 • 디지털 분야(22개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직종 •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23개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 (추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론, 예코업 등 첨단산업 분야 * 기존 국가 직종 통합(22개→18개) + 첨단산업 직종 추가(5개) 	고용노동부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22.11.17.)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137)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직종 • 디지털 분야(22개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직종 •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23개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 (추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론, 예코업 등 첨단산업 분야 * 기존 국가 직종 통합(22개→18개) + 첨단산업 직종 추가(5개) 	고용노동부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22.11.17.)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137)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대상)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종사 희망자 • (내용) 수준별 편성 권고, 산업안전·근로권익은 별도 교과 편성 • (훈련비) 계약유효기간 내 최대 3회 전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 발생 시, 일괄 10% 부담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본격 시행 ('23.1.1.) 보도자료</p>	<p>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23.1.1.)</p> <p>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044)</p>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 수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구직촉진수당 수급 3회 이내 취업시 50만원 ■ 조건부수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50만원+추가 최대 40만원) ■ 구직촉진수당 수급 4회 이내 취업시 잔여수당의 50% ■ 조건부수급자 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p>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3.1.1.)</p> <p>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p>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도자료</p>	<p>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3.1.1.)</p> <p>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1.1.)</p> <p>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예로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예로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p>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344)</p>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훈련을 실시하는기업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개시 5일 전까지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고, 개별 훈련과정 마다 사전승인 필요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훈련 실시신고 별도 필요, 훈련 과정 변경 시에도 별도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제출하면 훈련과정 별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지원 가능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p>	<p>('23.1월)</p> <p>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p>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 전부 수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 지원 가능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p>	<p>('23.1월)</p> <p>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이 전문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의 10%를 자부담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시스템 입력항목 다수 등 행정절차 까다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훈련 시 자부담금 10% 면제 훈련과정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 	(‘23.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p>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p>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하여 훈련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와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 컨설팅 지원 	(‘23.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p>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95)</p>
최저임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초과 금액 (월환산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0,5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p>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p>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설 (대상) 플랫폼 기업 또는 컨소시엄 (내용)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등 일터 개선 시 소요 비용 일부 지원 (지급) 소요 비용의 최대 50% (연간 3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대상 확대 (대상) 플랫폼 기업 또는 컨소시엄, 자치단체 (내용)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등 일터 개선 시 소요 비용 일부 지원 (지급) 소요 비용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p>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044-202-707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p>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044-202-7075)</p>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현장 일반 안전보건조치사항 중심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요인별 예방조치 및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 개편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22.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p>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p>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 안전관리자선임 대상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 안전관리자선임 대상 확대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p>산업안전보건법 (‘23.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p>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23.7.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전 후사경 미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굴착기 인양작업 허용('22.10.18.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의 인양 가능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10.18.)</p>
		<p>☞ (참고)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p>	<p>고용노동부 건설산업예방정책과 (044-202-8940)</p>
OEM 위탁제조자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만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M 제조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하도록 허용 • 위탁자가 비공개승인을 받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 • 위탁자가 비공개승인을 받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의 MSDS 제출 비공개 승인 의무를 면제 	<p>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23.1월중)</p>
			<p>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66)</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유기화합물(117종)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금속류(24종) - 3. 산알카리류(1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유기화합물(12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니트로톨루엔(특별) •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 벤조(a)피렌(특별) • 시클로헥실아민 • 와파린(특별) • 포름아미드(특별) - 2. 금속류(2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화붕소(특별) - 3. 산알카리류(1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원 노동권 인권 교육 의무화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 의무화 • (대상)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외국인 포함) • (주기) 매년 2시간(최초 3시간) • (방법) 이러닝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 • (내용) 선원의 노동권 인권에 대한 기본사항과 그 외 다문화, 성인지 등 포괄적인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 	<p>선원법 ('23.1.5.)</p>
			<p>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5)</p>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 :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 (부칙) 냉장보관 유통류 제품은 '31.1.1일 시행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 	<p>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1.)</p>
		<p>☞ (참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p>	<p>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8)</p>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체계 • 마트, 시장 등 매장에서 수거 후 정밀검사 진행 - 검사결과 확인에 4-5일 소요 되어 부적합 시 판매 소진 등으로 회수폐기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 수거검사 체계 • 새벽배송 물류센터에서 수거 후 정밀검사 진행 - 신속정밀검사(-4시간)를 통해 소비자 배송 이전에 결과 확인 및 부적합품 사전 차단 용이 	<p>('23.2월)</p>
			<p>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11)</p>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은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수리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상반기 예정)</p>
		<p>☞ (관련규정)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p>	<p>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043-719-6172)</p>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 국가 셀뱅크 운영(백신 생산용 세포주 분양·관리) - 백신 임상시험검체 품질검사 시험 지원 - 백신 제품화 맞춤형 컨설팅 등 	<p>('22.10월 준공)</p> <p>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0)</p>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민간 유통업체 창고 내 재고 보관 후 환자·의료기관에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 구축으로 국가가 유통업무의 일부를 직접 담당 • 유통수수료 절감 (20%→15% 내외)을 통한 제품 가격 인하 및 환자 부담 완화 	<p>('23.상반기)</p> <p>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6)</p>

질병관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개수: 1,12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개수: 1,165개 	<p>희귀질환관리법 ('23.1분기)</p>
		<p>☞ (참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정보알림) 공지사항) '22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p>	<p>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9)</p>

질병관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아청소년 (만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참고)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정보·알림>고시·지침>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희귀질환관리법 (‘23.1.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9)
	■ 국가 지원 부재 •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6개 기관의 장은 해당 종사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국가에서 검진비* 지원이 없었음 * 검진비는 비급여로 5~10만원 수준	■ 취약계층 대상 검진비 지원 • 「결핵예방법」에 따른 일부 돌봄시설 ¹⁾ 취약계층 종사자 ²⁾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³⁾ 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 1) 의료기관(산생아실, 산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복지시설 - 2)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 3)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	결핵예방법 (‘16.2.3.)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719-7344)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국가예방 접종 사업 도입		(신 설)	감염병예방법 (‘23.상반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76)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신 설)	■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3.2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24)
	■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최장 14일)	■ 지정 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즉시) ☞ (참고) 문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3국 콘텐츠의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3.3.28.)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6)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이용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제도 적용 • (저작권자 허락) 필요 • (비용) 저작권자 요구금액 • (권리행사 및 납부대상) 개별 저작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제도 적용 • (저작권자 허락) 불요 • (비용) 문체부 고시기준* • (권리행사 및 납부대상) 보상금수령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기준 - (포괄방식/수강생 1인별 시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수업)12원, ▲ (원격수업) 32원 - (종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기존 대학기준과 동일) × 저작물 이용량 × 교육생수 ** 보상금수령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23.1월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

문화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가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가 지원 •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 할인, 무료 시 감소되는 수입에 대해 문화재청에 신청 •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예산 지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3.5.4.)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1)

☞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법령정보> 법령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9.10.) • (주요내용) 부문별·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대책 및 적응대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23.3.) • (주요내용)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기본법 (‘22.3.25.)
			환경부 기후전략과 (044-201-6647)
조기폐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등급 경유자동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3.1.1.)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43dB, 야간 38dB •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39dB, 야간 34dB •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3.1.2.)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5)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생활할 고려 4dB씩 강화"

환경부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지급항목(6개)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미래세대실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지급항목(9개) • (신규추가) 텀블러 이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 (중진)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미래세대실천활동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23.1.1.)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5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자금 조달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 (개념)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 • (성격) 기업·금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발적 지침 • (활용) '녹색분류체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객관적인 외부 검토 필수 * 조달받은 자금은 녹색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사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3.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0)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먹는샘물 QR 표시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 표시방법(3가지) • 용기에 표시 또는 부착 •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 •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결면 또는 소포장지의 결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방법 추가 • (개념) 필수정보는 병마개에 표시하고, 상세정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를 이용하여 제품정보 제공 • (대상)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샘물 * '26년부터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하는 방식은 QR코드 방식으로 단일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22.12.30.)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4)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피해방지를 규정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관리 의무화 •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요청 • 피해방지조치 이행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6.11.)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보도자료)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p>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해양수산부

기상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온실가스집약 도지수 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고 선박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함 * '23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로 도래하는 선박검사 전까지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매년 선박온실가스집약지수를 계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최초) '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운항정보를 '24년 3월 31일까지 제출 	('23.1.1.~)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규제, 미리 준비하세요!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 법령정보)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운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온 기반의 폭염특보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최고기온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최고기온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최고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최고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p>예보업무규정 ('23.5./잠정)</p> <p>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p>
우리나라 영향태풍 정보 상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정보의 예보간격을 6시간 간격으로 제공 우리나라 영향태풍의 경우 통상적으로 6시간 간격으로 제공 * 12시간 이하 간격으로 발표 가능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태풍 상세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통과 예상 시 태풍정보의 예보간격을 3시간으로 상세화하여 제공 우리나라 영향태풍은 6시간 간격을 유지 하되, 한반도 통과 영역은 3시간 간격으로 상세 제공 태풍 상세정보 제공 지점을 추가·확대 민원 및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지점이나 방재 측면에서 필요한 지점을 추가 선정하여 제공 ☞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 태풍) 상세정보 및 통보문 	<p>기상청 국가태풍센터 (064-909-3965)</p>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기상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시험서비스('23년 2월-) 안개 발생 가능 정보 시험서비스(7월-) 	<p>기상청 관측정책과 (042-481-7341)</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이음5G 단말기 신속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 • 2.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 2. (현행과 같음) 	<p>전파법 시행령 (‘22.12월말 예정.)</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p>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생략) • 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현행과 같음) • 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p>전파법 시행령 (‘22.12월말 예정.)</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p>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의2(표본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최초로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6조의2(다중차폐시설)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이란 청문이 없는 두꺼운 벽의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 또는 차폐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의2(표본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삭제> 	<p>전파법 시행령 (‘22.12월말 예정.)</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빼고 산정한다. • 1. ~ 2. (생략) •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 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빼고 산정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 <삭제> 	<p>전파법 시행령 (‘22.12월말 예정.)</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 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에 대한 일시납부(이하 "전파사용료 연납"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연납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연납을 한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연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p>전파법 시행령 (‘22.12월말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4. ~ 6. (현행과 같음) 제118조 및 제124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삭 제〉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각 호 삭제〉 ● ③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제76조의2에 따른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허가받은 주파수(제76조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제2항에 따라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1.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총 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변경공사를 한 후 신설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p>전파법 시행령 (‘22.12월말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제76조의2에 따른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허가받은 주파수(제76조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제2항에 따라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중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삭 제) 	전파법 시행령 ('22.12월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채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수수료로서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40퍼센트를 감경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2. 제96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에 대해서는 고주파 출력이 가장 큰 하나의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삭 제) ■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채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40퍼센트를 감경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중입출력송수신설비를 사용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하여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로 검사하는 송수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수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2.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중 고주파 출력이 가장 큰 하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송신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검사 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검사수수료에 한정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 5. 기간통신사업자 - 6. 방송사업자. 	전파법 시행령 ('22.12월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를 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촉진 기관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법 ('23.1.12.)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 (044-202-6286)
클라우드 보안인증	■ (고시근거)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운영 • 인증평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인증평가 수수료 : 무료	■ (법률근거)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운영 •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평가기관 : 추가기정 예정 • 인증평가 수수료 : 유료 * 중소기업 일부 지원예정	클라우드컴퓨팅법 ('23.1.12.)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8)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동보드 안전기준	■ (신설)	■ 전동보드 세부 품목 신설 • 제5부 저속전동이륜차 • 제6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공통 안전기준 ☞ (참고)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정책> 제품(안전) 생활용품> 안전확인> "전동보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23.3.7.)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2)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은 한전, 전기안전공사 2개 기관으로 이원화 운영 • 인력 및 점검장비 중복투자 등 비효율 •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 어려움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 강화 •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보도자료*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공포	전기안전관리법 ('23.4.19.)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수소불화탄소(HFC)를 감축 규제 물질에 포함	■ 특정물질의 범위 • 오존층 파괴물질	■ 특정물질의 범위 확대 • (1종) 오존층 파괴물질 • (2종) 수소불화탄소(HFCs)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기갈리 개정서」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3.4.19.)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044-203-4934)	
집단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 -----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 ■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23.1.19.)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08)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확대지원개시일: ('23.1.1.)</p>
			<p>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60)</p>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조항 신설 	<p>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23.4.19.)</p>
			<p>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6)</p>

특허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 신고(§12), 승계(§13), 정당한 보상(§15②, ④) 등의 통지시 전자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근거 명시 전자문서 통지근거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 신고(§12), 승계(§13), 정당한 보상(§15②, ④) 등의 통지시 전자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근거 명시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p>발명진흥법 ('23.2.15.)</p> <p>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p>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전부거절제도 적용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전체 지정상품 거절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보정하거나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만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을 등록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부분거절제도 적용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받을 수 있음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을 삭제·보정하거나 분할출원 하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p>☞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상표법 ('23.2.4.)</p> <p>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p>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다룰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재심사 청구 가능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 이유를 지정상품 또는 상표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가능 단, 재심사 청구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음 <p>☞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상표법 ('23.2.4.)</p> <p>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p>

국토교통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밀한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KASS) 개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GPS의 위치 오차를 3m 이내로 보장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재보다 정확도 높은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 	공항시설법 ('23.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3일 새벽 6시 대한민국 항공위성 1호기 발사"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201-4350)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항공기 소음단위(웨클)에 따른 6개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웨클→Lden) 시행에 따른 전국 6개 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고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2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2.12월중 배포 예정'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 다만, 현재 공사 직전 단계 (실시계획 승인)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환승편의성을 사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검토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검토시기) 도시철도 및 철도노선 사업 기본계획 단계 (검토대상) 대도시권에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철도역의 건설·개량사업 (평가내용)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 배치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 (절차) 환승편의성 검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검토내용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3.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 뉴스·소식) 카드뉴스) [카드뉴스]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으로 환승이 확~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 (044-201-5136)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대상)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내용)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임차하여 경작한 이후 매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계약체결시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하여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농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규모) 총 20ha(8,160백만원) (제한도) 1ha이내/명(영농경력 2년 이하 0.5ha 이내) 	('23년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식품부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업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2, 1733)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규모 연 2,000명 선발 지원금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진입조건 본인 또는 부모소득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 제외 농한기 일시적(3개월) 농외근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규모 연 4,000명 선발 지원금 월 최대 110만원 지급 진입조건 부모소득 기준 폐지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은 시기 제한 없이 허용 	('23.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식품부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업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농 금융 부담 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3억원 • (금리) 2%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총 15년) ■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총 15년) ■ 우수후계농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5억원 • (금리) 1.5% •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상환(총 25년) ■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상환(총 25년) ■ 우수후계농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0.5%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업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p>	(‘23.1.1.)
		<p>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p>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일부자금만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 • (기준) 4개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경영자금 - 농지매매 - 농지교환분할 - 과원규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모든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 • (변경) 54개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대상인 모든 농업정책자금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예정)”</p>	<p>농어업재해대책법 (‘22.12.11.)</p>
		<p>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4)</p>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지 않은 농지는 기본형 직불금 대상 농지에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해당 연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기본형 직불금 수령이 가능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p>	<p>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3.4.19.)</p>
		<p>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낙농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비연동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증가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을 결정(음용 가공용 상관없이 동일 가격 적용) * 우유 생산비 증가분의 90~110% 범위 내에서 기본가격 조정협상 ■ (원유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분(유단백, 유지방), 위생등급(체세포, 세균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 * 유지방의 경우 4.1%에 최대 인센티브 제공 ■ (의사결정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진흥회 이사회 * (개의) 재적이사 2/3이상 출석, (의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별 차등가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를 음용용, 가공용에 따라 다른 가격 적용 - (음용유) 생산비+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상황에 따라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편 * 생산비 상승 시 (과잉, 부족, 적정) △30%~120% 범위 내에서 협상 - (가공유) 경영비+국제경쟁력을 반영한 가격 결정체계 도입 * 시행 초기인 '23년에는 800원/ℓ 적용 ■ (원유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분(유단백, 유지방), 위생등급(체세포, 세균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 * 유지방 최대 인센티브를 3.8%로 조정하고 지속가능 지표인 젖소산차와 유우균 검정사업 참여여부 추가 ■ (의사결정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진흥회 이사회 * (개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완화,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 ※ 공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 <p>☞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낙농진흥회 이사회, 낙농제도 개편안 의결”,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p>	(‘23.1.1.)
		<p>농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0)</p>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도매유통은 도매시장에서 대면거래 선물류 후거래*(상물일치) * 도매시장에 물품이 도착한 후 거래체결 농협 공판장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시험사업) * 양파·마늘 등 18개 품목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도매거래를 위한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선거래 후물류*(상물분리) * 온라인 도매를 통해 거래체결 후 배송하여 거래와 물류 효율 향상 도매법인, 공판장 등 다양한 유통주체 참여하는 통합플랫폼 청과류 전체로 취급 품목 확대 	(‘2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산물온라인거래소 통합플랫폼 구축(‘23년 12월, 잠정)
전락작물직불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활용직불 시행 (지급대상) 논에서 재배하는 동계작물 (지급단가) ha당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락작물직불제 시행 (지급대상) (동계) 논에서 재배하는 동계작물, (하계)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지급단가) 기존 논활용 지급대상작물은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유지하고,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원 지급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23.1월, 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 관련 사업 공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 수목식재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 수목 식재 비용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 수목 식재 비용 제한 폐지 	(‘2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 관련 사업 공고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지원단가 :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국비기준 56,000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지원단가 : 8.4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국비기준 58,800원 지원 	(‘2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준 *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이 6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대상 품목 3개(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를 신규 도입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한 품목이 70개로 확대 * '27년까지 80개로 확대 	(‘23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 중점방역관리지구: 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 8대 방역시설: ① 전실, ② 외부올타리, ③ 내부올타리, ④ 방역실, ⑤ 물품반입시설, ⑥ 입출하대, ⑦ 방충시설·방조망,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23년까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22.12.31까지 해당시설 완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2.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할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게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가능 	수의사법 ('2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병원에서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할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들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함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内部臟器)·뼈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및 수혈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p>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2)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공모를 1~4월에 걸쳐 사업별 공고 사업별 실정에 따라 자율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공모를 1월에 일괄 공고 (원칙) 1월에 2주간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모집 사업 접수마감일은 매월 10일로 통일 (예외) 신규사업 등의 경우 2월까지 공고, 공고기간은 필요시 1주 연장 가능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증빙서류를 여러 행정기관에서 각자 발급받아 사업마다 중복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신청 증빙서류를 정보제공 동의로 한 번에 자동제출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공자공고 > 관련 사업 공고</p>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5)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한민국식품명인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해 명인 표시 가능 사후관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만 명인표시 가능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시 표시중단·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및 표시중단·제거 명령의 대상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8532호, 2022.12.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p>	식품산업진흥법 ('22.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4)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방제업 신고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약 항공방제업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자원)에 신고 • 신고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농약관리법 ('2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약피해분쟁 조정위원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 신청 • 다른 사람 등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등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p>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증자과 (044-201-189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계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대상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신고주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대리점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 등), 지역농협 	농업기계화 촉진법 ('23.7.5.)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 (044-201-1896)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일손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발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3.1.)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 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 개발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분야 선도기술을 농식품 산업에 적용·연계하기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형 R&D 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3.1.)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 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한 실증 등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23.1.)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 관련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조사정점) 45개 * 일반정점(반기조사) 23개/주요정점(격월조사) 22개 (조사대상)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항목)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조사정점) 52개 * 일반정점(반기조사) 23개 / 주요정점(격월조사) 29개 (조사대상/항목) 좌동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23.1월 중)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1)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유형2)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 (유형3)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 규모 및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1) 25개소, 300억원 이내(4년) ※민간 100억원 이상 (유형2) 175개소, 100억원 이내(4년) (유형3) 100개소, 50억원 이내(3년)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1) 행정, 민간투자자, 지역전문가 및 지역리더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 (유형2) 지역활성화사업 추진경험이 있는 지역활동가 등 앵커(Anchor) 조직과 주민 (유형3) 지역 전문가 및 주민 등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23~)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어촌에 총 3조원 투자...질사는 어촌 시대 연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044-200-617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역) 10개 항로 x 운영비 0.9억원 x 국고보조비율 50% 	<p>해운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3.1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사업 시범 실시” 보도자료(게시예정)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방해·교란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등을 이용한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법적인 의무가 아닌 자율지침(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 • 지침(가이드라인)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음 	<p>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4.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등을 이용한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 (금지행위) ① 해양보호생물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②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③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 (처벌) 2백만원 이하 과태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 창구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 평가 협의기관은 처분기관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누어 수행 	<p>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3.5.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개발 사업 중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시 협의기관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가단위)에게 직불금 지급 	<p>수산직불제법 (‘23.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신설 • (대상) 일정 소득규모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6개월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액) 120만원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연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 만 65세에서 만 75세 미만 어업인 • 어촌계원 자격유지기간 10년 필요 	<p>수산직불제법 (‘23.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 만 65세에서 만 80세 미만 어업인 * '26년까지 한시적용 • 설립기간이 10년 미만인 어촌계는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면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구 생애 주기 관리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구 생애 주기 관리체계 미흡 어구생산·판매업 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구 생애 주기 관리체계 도입 어구생산·판매업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 생산·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벌칙)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 colspan="2">처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행정처분</td> <td rowspan="2">영업정지</td> <td>미기록</td> <td>1차(경고), 2차(1개월), 3차(2개월)</td> </tr> <tr> <td>일부</td> <td>1차(1개월), 2차(2개월), 3차(3개월)</td> </tr> <tr> <td>전부</td> <td>1차(1개월), 2차(2개월), 3차(3개월)</td> </tr> <tr> <td>거짓기록·훼손·제거</td> <td>1차(1개월) 2차(2개월)</td> </tr> <tr> <td rowspan="2">영업폐쇄</td> <td>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위반</td> <td>1차(2개월) 2차(3개월)</td> </tr> <tr> <td>거짓신고, 영업정지중 영업, 거짓기록·훼손·제거 3차이상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3차 이상 위반</td> <td></td> </tr> <tr> <td rowspan="2">과태료 부과</td> <td>미신고, 폐쇄명령 위반</td> <td>200만원 이하</td> </tr> <tr> <td>변경 및 폐업 미신고</td> <td>100만원 이하</td> </tr> <tr> <td></td> <td>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또는 거짓진술</td> <td>100만원 이하</td> </tr> </tbody> </table>	종류	처분 내용		행정처분	영업정지	미기록	1차(경고), 2차(1개월), 3차(2개월)	일부	1차(1개월), 2차(2개월), 3차(3개월)	전부	1차(1개월), 2차(2개월), 3차(3개월)	거짓기록·훼손·제거	1차(1개월) 2차(2개월)	영업폐쇄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위반	1차(2개월) 2차(3개월)	거짓신고, 영업정지중 영업, 거짓기록·훼손·제거 3차이상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부과	미신고, 폐쇄명령 위반	200만원 이하	변경 및 폐업 미신고	100만원 이하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또는 거짓진술	100만원 이하	수산업법 ('23.1.12.)
	종류	처분 내용																											
행정처분	영업정지	미기록	1차(경고), 2차(1개월), 3차(2개월)																										
		일부	1차(1개월), 2차(2개월), 3차(3개월)																										
	전부	1차(1개월), 2차(2개월), 3차(3개월)																											
	거짓기록·훼손·제거	1차(1개월) 2차(2개월)																											
영업폐쇄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위반	1차(2개월) 2차(3개월)																											
	거짓신고, 영업정지중 영업, 거짓기록·훼손·제거 3차이상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부과	미신고, 폐쇄명령 위반	200만원 이하																											
	변경 및 폐업 미신고	100만원 이하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또는 거짓진술	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구실명제 「어업허가규칙」에 규정 (벌칙) 영업정지 20~40일 어구일제회수제 미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구실명제 「수산업법」으로 격상 (벌칙추가) 1,000만원 이내 벌금 어구일제회수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해역 및 기간 지정 행정관청에서 해당 해역 및 기간에 설치된 어구 수거 또는 어업제한 명령 폐어구 및 유실어구 수거·처리비용 소유자 부담(천재지변 등 제외) <p>☞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p>	해양수산업법 어업기자재관리과 (044-200-5604)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공공기관 및 선사에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공공기관 및 선사 외에 선박소유자 관련자(가족 등)에게도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제공 * (원칙) 선박소유자 승인 필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선박위치정보 확대제공 실시(예정) 	해당없음 ('23.4.1.)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여객선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선박위치, 출발·도착정보 등을 제공 ☞ (참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예정) 	해양수산업법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 ☞ (참고)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 법령정보)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 ('23.1.5.)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 계획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안전항만구축 (아라미르 프로젝트) •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시설) 32개 항만 71개소 (취약지구) 22개 항만 25개소 * 60개소 완료, 11개소 추진 중, 25개소 미추진 • (기간) '11 ~ '30 • (설계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심해설계파 추정보고서 적용 50년 재현빈도 적용 (폭풍해일고, 설계파 등) 바람장 실험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 (제2차 재해안전항만구축) •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시설) 30개 항만 43개소 (취약지구) 16개 항만 22개소 * 긴급성, 위험성, 효율성, 형평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개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 사업추진 • (기간) '23 ~ '32 • (설계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심해설계파 산출 보고서 적용 100년 재현빈도 적용 (폭풍해일고, 설계파 등) 바람장(태풍/비태풍) 실험 적용 	항만법 ('23. 상반기)
			해양수산업법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72)

산림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숲경영체험림 제도 시행	(신 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 시행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23.6.11.)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전문임업인 입야 매입 가능 지역 확대	■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시·군 내 입야 매입시 정책자금(융자) 지원	■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광역 시·도까지 입야매입 가능 지역 확대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23.1.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2)
귀산촌 대상자 완화 및 공동사업 가점 기준 신설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퇴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미포함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23.1.1.)
		■ 귀산촌 사업계획서 평가 시 공동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2)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 및 귀산촌인 창업 자금 신청기간 확대	■ 2~3월, 6~7월	■ 연중 수시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23.1.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2)

국방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table border="1"> <tr> <th colspan="2">'22년 병 봉급</th> <th colspan="2">'23년 병 봉급</th> </tr> <tr> <th>구분</th> <th>봉급액(원)</th> <th>구분</th> <th>봉급액(원)</th> </tr> <tr> <td>병장</td> <td>676,100</td> <td>병장</td> <td>1,000,000</td> </tr> <tr> <td>상병</td> <td>610,200</td> <td>상병</td> <td>800,000</td> </tr> <tr> <td>일병</td> <td>552,100</td> <td>일병</td> <td>680,000</td> </tr> <tr> <td>이병</td> <td>510,100</td> <td>이병</td> <td>600,000</td> </tr> </table>	'22년 병 봉급		'23년 병 봉급		구분	봉급액(원)	구분	봉급액(원)	병장	676,100	병장	1,000,000	상병	610,200	상병	800,000	일병	552,100	일병	680,000	이병	510,100	이병	600,000		공무원 보수규정 (‘23.1.1.)
	'22년 병 봉급		'23년 병 봉급																								
구분	봉급액(원)	구분	봉급액(원)																								
병장	676,100	병장	1,000,000																								
상병	610,200	상병	800,000																								
일병	552,100	일병	680,000																								
이병	510,100	이병	600,000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보상비 : 62,000원	■ 동원훈련 보상비 : 82,000원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23년 예비군 훈련 시 부터)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4)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 2 (적금의 정부지원)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 2 (적금의 정부지원)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병역법 시행령 (‘23.1.1.)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국방부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영생활관 생활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실 기준 생활실 • 장병 1인당 생활공간 7.57㎡ 제공 • 생활실 밖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두고 공용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생활실로 개선 • 장병 1인당 생활공간 10.78㎡로 확대 * 변경전 대비 +3.21㎡(42.4%) 증대 • 생활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실 추가 배치 	해당없음
			국방부 건설관리과 (02-748-5798)
비상근 예비군제도 (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 - 단기: 연 30일 이내 - 장기: 연 180일 이내 ① 시험부대 1개 ② 운용직위: 50개 ③ 운용기간: 18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 - 단기: 연 30일 이내 - 장기: 연 180일 이내 ① 시험부대 3개 ② 운용직위: 83개 ③ 운용기간: 180일 (40, 60, 80, 100, 120, 160, 180 등 선택 세분화) 	예비군법·병역법 ('22년 3월부터)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1)
군 상용장비 (차량, 건설기계) 안전검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운용 상용차량과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하여 국가 검사기관 활용 정기검사로 장비 안전관리 수준 향상 • (적용장비) 상용차량, 건설기계 • (적용방법) 민간 검사제도 적용 안전검사 시행 - 상용차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활용 지역별 지정 검사소 방문(연 1회 검사) - 건설기계는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에 지역 단위 방문 및 출장 검사(2년 1회) 	군수품관리법 ('21.04.13.)
			국방부 장비관리과 (02-748-5733)
		☞(참고) 국방부홈페이지<보도자료> 모든 군 상용차량·건설기계 안전검사 한 번 더 한다.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자는 전액, 10만원 초과자는 10만 원 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제도 개선 ('23. 1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시외버스 운임단가예따라 지급 • 이동거리에 따른 지급단가 (131.82원/km)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 • 최적 이동 경로에 따른 연료비와 통행료 산정 * '여비 자동산정시스템' 활용, 개인맞춤형 여비 자동산정 • 자동차 기준 지급으로 1인당 평균 지급단가 상승 	제도 개선 ('23. 1월)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897)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판정검사 대상 •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지상작전사령부 입영자 전체 	제도 개선 ('23. 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리검사 항목 28종 • HIV 검사 등 2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리검사 항목 30종 • HIV 검사 등 28종 + 2종 추가 (알부민 검사, HDL콜레스테롤 검사) 	제도 개선 ('23. 2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병무청

방위사업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선발대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선발 기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상근예비역선발 기회 부여 (대상)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신청) '23년 상반기(6월) (선발) '23년 12월에 다음 연도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 (입영·복무)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p>제도 개선 ('23년 6월)</p>
			<p>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p>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 조리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단, 신체 제한사항에 따라 지원 불가능할 수 있음) 	<p>제도 개선 ('23. 1월)</p>
			<p>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p>
유치원교사, 현역병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 8·9월 또는 다음해 2·3월 입영일자가 8~12월인 경우 : 다음해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 추가 	<p>제도 개선 ('23년 1월)</p>
			<p>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p>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휴학 중인 사람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동원훈련소집 연기 	<p>제도 개선 ('23년 1월)</p>
			<p>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70)</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후속함 업체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은 적격심사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함 건조업체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도함 건조 이후 소요군 개선소요 반영, 부품단종 및 후속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활동 계획, 기존 탑재장비의 국산화 개발유도 	<p>방위사업 관리규정,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23.1월 중)</p>
			<p>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0)</p>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제안 업체에 대한 평가내용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제안 업체에 대한 평가 내용 반영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 평가 * 상용 하드웨어(무기체계)에 포함되는 하드웨어 중 구매하는 서버, 네트워크 등의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국산제품 도입 방안 등을 평가 	<p>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23.1월 중)</p>
			<p>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0)</p>
방위사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업설명회까지의 최소기간 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요청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입찰공고 * 사업설명회 참석 업체에 한하여 제안요청서를 배부하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업체 입찰참여를 위한 기회보장 	<p>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23.1월 중)</p>
			<p>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0)</p>

방위사업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임단가 산정기준 • 업체별로 노임단가 산정기준 다소 상이(품질부서 반영여부 등) • 업체별 변동률 적용방식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합의 시 합의된 인상을 - 미합의 시 경총 제시율과 업체 노임단가 변동률의 평균 적용 • 방위사업청 원가팀에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임단가 산정기준 • 노임단가 산정기준 통일 (품질부서 제외, 복리후생적 수당 제외 등) • 변동률 적용방식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고시율과 업체 노임단가 변동률의 평균 적용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산정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2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산정 방식 • 이윤항목 : 13개 • 기본보상 조정계수 : 0.38 • 수출 및 연구개발 이윤 상한 : 3%(중소 4.5%) • 수출 및 연구개발 이윤 대상 원가 : 총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산정 방식 • 이윤항목 : 7개 • 기본보상 조정계수 : 0.65 • 수출 및 연구개발 이윤 상한 : 6%(중소 9%) • 수출 및 연구개발 이윤 대상 원가 : 총원가 - 수입재료비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02-2079-6954)
		<p>☞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p>	
위원회 심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위원회 심의를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 법인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방위사업 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 생략 	방위사업관리규정 ('22.8.25.)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27)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재반입 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수출의 목적 상 기한 내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견본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방위사업관리규정 ('23.2.)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6)

국가보훈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버스와 지하철 무임 승차 시 여러 가지 신분증 사용(4중 지참) • 교통복지카드, 수송시설이용증서, 상이군경회원증, 국가유공자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버스와 지하철 승차 시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이용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23.1.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18)
정전70주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1월 기준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복 (자켓, 바지, 벡타이) 제작·지급 * 3월 이후 일정·신청 방법등 안내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3.1.1.)
		(신 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55-6)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민법 제1019조제4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 상속인에게 부모의 빚 대물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 (원칙)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 • (예외)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다도 다음의 경우 개정 규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 -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p>민법 (22.12.13.)</p>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00-3164)</p>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 확립 • (예외) 다른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계약 등 법률행위로 달리 정하는 경우 (민법 제155조) 	<p>민법 (23.6.28.)</p>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p>	<p>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p>
수형자 전화통화 허용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통화 허용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처우급(S1) : 월 5회 이내 • 완화경비처우급(S2) : 월 3회 이내 •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통화 허용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처우급(S1) : 월 25회 이내 • 완화경비처우급(S2) : 월 20회 이내 • 일반경비처우급(S3) : 월 10회 이내 • 중경비처우급(S4) : 월 5회 이내, 사형확정자는 월 10회 이내 	<p>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p>
		<p>교정본부 교정혁신추진단 (02-2110-3886)</p>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귀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 영주·귀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단계 	<p>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23.4.1.)</p> <p>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재 영주·귀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 우수인재 영주·귀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p>우수인재 거주 영주·귀화 통합지침 제정 및 시행 (22.12월 중)</p> <p>법무부 국적과 (02-2110-4131)</p>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미이행 남성의 국적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만 국적이탈신고가능 : 예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미이행 남성의 국적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만 국적이탈신고 가능 : 예외 신설 •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 : 국적이탈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 	<p>국적법 제14조의2 (22.12월 중)</p> <p>법무부 국적과 (02-2110-4123)</p>

행정안전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법인 제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범위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지역관광상품권 등)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 통해 기부 가능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개) 방문 	<p>고향사랑 기부금법 (23.1.1.)</p> <p>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7)</p>

행정안전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지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사·군·구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 1장을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가까운 사·군·구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 (주민등록지→전국) * 정부24를 이용해 사진을 파일로 제출 가능 	<p>주민등록법 시행령 (’23.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p>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5)</p>
「인구감소지역 자원 특별법」 본격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 부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 생활인구 개념 정의 * 세부사항은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 	<p>인구감소지역 자원 특별법 (’23.1.1.)</p>
		<p>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2)</p>	

인사혁신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5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인정기간 없음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p>공무원임용시험령 (’2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새소식) 언론보도자료)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22.11.8.) 	<p>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5)</p>

법제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실체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 확립 • (예외) 다른 법령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p>행정기본법 (’23.6.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p>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044-200-6736)</p>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 ■ 실권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청의 제재 처분 가부를 재판절차에서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법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 제기 가능 ■ 6종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 불가 •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등을 받거나 인허가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등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적용 제외 * 영업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폐쇄명령,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도 새로운 사실 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처분에 대한 재심사 신청 가능 	<p>행정기본법 (’23.3.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행정기본법” 	<p>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044-200-6741)</p>

조달청

조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비축물자 재고운영 및 방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축물자는 안전재고와 운영재고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품목별 특성,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적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방출량과 한도량을 결정 또는 조정한다. 다만, 상시방출 물량은 운영재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수급 및 가격동향 전망 비축물자 방출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수요자의 연간 소비량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축물자는 안전재고와 운영재고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② 계약담당관은 품목별 특성,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적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방출 등 원활한 운영재고 운영을 위해 재고현황을 고려하여 안전재고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방출량과 한도량을 결정 또는 조정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상시방출을 위해 안전재고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 시기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안전재고 물량을 충당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수급 및 가격동향 전망 비축물자 방출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수요자의 연간 소비량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요구 사항 	<p>조달청 비축사업운영규정 (*23.1.1.)</p> <hr/> <p>조달청 원자재비축과 (042-724-70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혁신시제품의 규격 추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된 혁신시제품에 규격추가 허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혁신시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인 경우 	<p>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23년 상반기 중)</p> <hr/> <p>조달청 혁신조달과 (042-724-7203)</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전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포상금은 1인당 12개월간 4회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론매체 등 공개 건 중 신고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증가가 없는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포상금 지급횟수 상한 내용 삭제 	<p>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2.5.30.)</p> <hr/> <p>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술연구용역 ② 시설분야용역 ③ 소프트웨어용역 ④ 폐기물처리용역 ⑤ 육상운송용역 ⑥ 보험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①~⑥ 용역 ⑦ 수리·점검용역 - 기술등급 심사항목 도입 ⑧ 임대차 용역 - 사후관리(A/S) 심사항목 도입 ⑨ 수요기관 지정형 -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신규 용역분야 적격심사 기준 신설 (6개 분야→9개 분야) 	<p>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p> <hr/> <p>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2)</p>

경찰청

경찰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법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전송 번호와 악성앱을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 그냥 문자만 차단(신고포기)피해가 없는 경우, 신고해도 차단 사이트 URL을 안내하는 등 미온적 조치 신고에 종합대응할 수 있는 부처가 없어 범행기간 동안 추가 피해 누적 각 부처별 처리에 그치고, 데이터가 통합 분석되지 않아 범죄조직*에 대한 종합적 대응 곤란 <p>* 총책/클센터/자금관리·통신·IT·정보팀 등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들은 '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센터에서도 △번호정지△악성앱 차단 등 원스톱 처리하여 불안감 해소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합동 대응하고, 범죄 데이터를 공유하여 추가 피해확산 방지 범죄관련 데이터(계좌 등 금융정보, 전화 번호·회선·IP 등 통신정보, 수사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범죄조직 근절에 활용 <p>☞ (참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관련 보도자료"</p>	<p>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2.8.30.)</p> <hr/> <p>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3433)</p>
		<p>차량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금 벌점 부과
<p>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벌칙금 부과</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운전자의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에 대한 벌칙금이 규정됨(6만원) - 기존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한 불합리 개선 	<p>도로교통법 (*23.1.1.)</p> <hr/> <p>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1)</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 방법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색의 등화의 의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함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음 <p>■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색의 등화의 의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함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음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없음 <p>■ 우회전 삼색등의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 가능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 	<p>도로교통법 (*23.1.22.)</p>
		<p>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 방법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등의 신호순서 교차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음

소방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대상 (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대상 추가 (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p>소방기본법 (‘23.5.16.)</p>
			<p>소방청 생활안전과 (044-205-7665)</p>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모든 대상에 대해서 겸직이 가능한 상태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원칙)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제외)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가능 	<p>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22.12.1.) 동법 시행령 제26조</p>
			<p>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p>

소방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선임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건설현장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운영 제도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선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각①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 창고에 해당하는 것 	<p>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22.12.1.) 동법 시행령 제29조</p>
			<p>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p>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불시 소방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교육훈련 실시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 결과서를 관계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p>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22.12.1.)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p>
			<p>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p>

소방청

소방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시소방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소방시설 • 기존 임시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임시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피난유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소방시설 •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가스누설경보기 - 간이피난유도선 - 비상조명등 - 방화포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임시소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피난유도선 - 가스누설경보기 - 비상조명등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 -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현장에 설치. 	<p>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22.12.1.) 동법 시행령 제18조</p> <p>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p>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위주설계 대상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위주설계 대상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p>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2.12.1.) 동법 시행령 제9조</p> <p>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p>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종면허증 대어·알선 금지, 보험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 운영 규정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경찰청장이 5년 주기의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종면허증의 대어·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보험회사 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 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 등 미가입자에 대하여 보험 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23.6.11.)
조종면허증 대어·알선 행위 금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1)
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근거,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관련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인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안전검사에 합격할 경우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규정 	수상레저 기구등록법 ('23.6.11.)
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부착 의무화 근거 마련			
위치발신장치 등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1)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체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인 친족범위는 배우자,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친족으로 규정 사외이사 지배회사도 원칙적 계열회사에 포함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열편입 유예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족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족 6촌, 인척 4촌 → 혈족 4촌, 인척 3촌 * 단, 혈족 5-6촌·인척 4촌이 동일인족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는 친족범위에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 계열회사에서 제외 단, 임원독립경영 요건 미충족시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 중소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상 확대(R&D 비중 5% 이상 → 3% 이상)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 보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12.27.)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심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임이 명백함에도 일반심사 적용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 임대·개발 등 투자수익 목적의 부동산 양수도 등 경쟁제한 우려 없음이 비교적 명확한 유형으로 간이신고가 적합함에도 일반신고 적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참여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승인된 기업결합의 정식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투자 목적임이 명백한 유형에 대하여 간이심사 확대 적용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 임대·개발·채분 목적의 단순 부동산 양수도 등 그 외 투자 목적 기업결합임이 명확한 경우 경쟁제한성 없음이 비교적 명확한 유형에 대해 간이신고 확대 적용 *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심사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참여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승인된 기업결합의 정식신고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 보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p>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22.12.3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44-200-4366)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신설 지급수단, 지급기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 수급사업자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사항 확인 가능 	<p>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1.12.)</p> <hr/> <p>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p>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 보도)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p>	
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위반행위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이 최대 30%로 규정 (대리점 분야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위반행위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 구체적 감경 비율은 자진시정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결정 	<p>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3.1.12.)</p> <hr/> <p>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p>
		<p>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2.12.28.)</p> <hr/> <p>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6)</p>	
		<p>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22.12.28.)</p> <hr/> <p>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949)</p>	
		<p>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2.12.28.)</p> <hr/> <p>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044-200-4960)</p>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 보도) "하도급 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p>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허가번호 정보)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허가번호 등의 정보 표시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의 정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의 정보 표시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신설 (설치형 가전제품 추가 설치비용) 신설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 지침 제시 등) 상품 정보 및 거래 조건 정보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허가번호 정보)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의 정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분명하고도 용동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재공급 사유 및 하자부위에 관한 정보 표시 (설치형 가전제품 추가 설치비용) 추가설치비용 표시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 지침 제시 등) 상품 정보 및 거래조건 정보 표시지침 추가 	<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23.1.1.)</p> <hr/> <p>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6)</p>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 보도)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p>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 보도)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p>		
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필요 	<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2.3.)</p> <hr/> <p>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44-200-4432)</p>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 보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에 대한 맞춤형 사례가 아닌 모범례만을 제공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은 스스로 사건개요·경위 처분의 위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이 편리하고 구체적으로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문서변환) 행정심판 청구서 속성별로 재결서에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기계판독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연관분석) 과거 사건의 연관분석을 통해 청구인 상황과 유사한 청구서 작성 정보들을 제공 (청구서 자동완성) 데이터바구니 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에 맞게 자동완성 서비스 제공 	<p>행정심판법 (‘23.1.1.)</p> <hr/> <p>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9)</p>

원자력안전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존)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체계가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변경)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및 교육 의무화 항공승무원 건강영향조사 실시 항공승무원 실태조사 및 정기검사 실시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조치 사항 기록·보관 	<p>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3.6.11.)</p> <hr/> <p>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6)</p>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및 권리 시범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 행사 한계 인터넷 자기계시를 접근배제 요청이 가능하나 신청방법이 아동·청소년에게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청이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권 행사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권 강화 아동·청소년이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대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계시물의 삭제 요청을 쉽고 편리하게 진행 	<p>개인정보 보호법 (‘23.4월 중)</p> <hr/> <p>☞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p>
		<p>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 확대 (공공→공공·민간)</p>	
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 확대 (공공→공공·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제공목적의 자체결합을 공공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 정보처리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제공목적의 자체결합 허용 확대 (공공→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자체결합”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의4① 	<p>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23.1.1.)</p> <hr/>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76)</p>
		<p>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p>	
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대학(원)의 개인정보보호 전공 및 학과가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혁신인재 양성사업’ 대상 1개 대학 선정하여 추진 ‘22년에 선정되어 교과과정 개발을 완료한 서울여대(1개교)는 ‘23년 정보보호학과 내 부전공 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 전공을 개설·운영할 예정 (사업기간) ‘22.3월~‘25.2월(3년) (총 사업비) 약 13억원(‘22년 3.4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인재 양성사업’ 대상을 5개 대학으로 확대 ‘23년에는 신규로 4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전공 개설 및 관련 교과개발·운영을 추진할 계획 	<p>☞ (참고)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국내 대학에서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가 양성 보도자료</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5)</p>	